

李相瑄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高麗時代 支配階級 女性의 再嫁 研究

200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白 承 蟾

# 高麗時代 支配階級 女性の 再嫁 研究

李相瑄 教授指導

이 논문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년 5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白 承 蟾

# 認 准 書

白承蟾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文概要

최근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부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부부가 헤어져 부부 중심의 가족이 해체된 뒤 다시 가정을 이룰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2차 결혼행위, 곧 '再婚'이라는 형식을 거치게 된다.

그 동안 고려시대 여성의 재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아서, 전반적인 혼인문제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또는 여성사와 가족·친족제도 연구시, 그리고 조선시대 재가 금지를 다루는 자리에서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 재가문제만을 단독으로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은 고려시대 재가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소위 문벌·귀족사회라고 일컬어지는 고려사회의 특수성은 거의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재가 사례, 그 중에서 지배계급 여성의 재가 사례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고려시대 여성의 재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고려시대가 조선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守節·貞節 의식 또한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재가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었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고려시대 혼인은 전근대 어느 시대보다도 정략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집안과 집안간의 일로서 중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가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재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초혼과 다름없이 혼인절차와 의례를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재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정략적인 목적으로 이

용되거나 권력가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론 의탁할 곳이 없어서 재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스스로 자신이 재가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재가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지만, 이 경우는 여성 측의 권세와 재력이 바탕이 되어서 가능했던 것일 뿐이다. 前夫에 비해 後夫의 관직이 결코 뒤지지 않았던 것도, 이와 같은 고려시대 혼인·재가의 성격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이 더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재가한 여성이, 後夫의 입장에서 中室이나 後室인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고려시대 재가녀의 한계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여성들이 자유롭게 재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고려 전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재가 사례와 권력과 부귀를 좇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를 버리는[棄妻] 사례가 무신 난 이후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국가 전반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는 고려 후기에 재가와 기처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가 고려시대에 일반적·보편적으로 행해졌다는 기존의 주장은 再考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고려전기에 자주 나타나던 旌表政策과는 반대의 결과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 目 次

## 論文概要

I. 序論 .....	1
II. 再嫁에 대한 인식 .....	4
1. 高麗 以前 社會에서의 再嫁에 대한 인식 .....	4
2. 再嫁에 대한 법제적 인식 .....	7
3. 再嫁에 대한 사회적 인식 .....	13
III. 再嫁의 사례 .....	23
1. 정치적·정략적 성격의 재가 .....	23
2. 권력에 의한 재가 .....	34
3. 성적 욕망에 의한 재가 .....	40
4. 의탁형 재가 .....	44
IV. 高麗時代 再嫁를 통해 본 支配階級 女性의 生活相 .....	51
V. 結論 .....	62

## 參考文獻

## ABSTRACT

## I. 序論

'再嫁'란 혼인의 하나로서, 여성이 死別이나 離婚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기된 뒤 다시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sup>1)</sup> 혼인은 양성간의 결합으로서 한 사회의 가족 및 친족제도, 그리고 그 사회의 의식, 나아가 정치변동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마찬가지로 혼인의 한 형태인 재가 역시 그 사회의 실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고려시대 여성의 재가에 관한 연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개 사회사 연구,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가족제도 연구 성과 안에 포함되어 부분적으로 다루졌다.<sup>2)</sup> 그리고 그 견해도 고려시대에는 재가를 강력

---

1) 일반적으로 再婚은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가 두 번 이상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며, 비슷한 의미인 再娶는 남성의 경우에만, 再嫁는 여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본고는 여성의 재혼만을 다루기 때문에 再嫁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이와 관련된 논문들은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權純馨, <고려 혼인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이화사학연구》 22, 1995; <고려시대 혼인제도에 대한 일 연구 - 이혼을 중심으로 ->, 《이대사원》 29, 1995; <다시 생각하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여성과 사회》 9, 한국여성연구소, 1998; <고려의 이혼과 재혼>, 《민속학연구》 6, 1999; <고려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생활>, 《국사관논총》 95, 2001; 《高麗時代 婚姻制度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7.

김주희, <고려시대의 혼인 : 인류학적 해석>, 《가족과 문화》 10집 2호, 1998.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을유문화사, 1969;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金龍善, <고려 귀족의 결혼·출산과 수명>, 《한국사연구》 102, 1998.

金用淑, 《韓國女俗史》, 민음사, 1989.

尹庚子, <高麗王室의 婚姻形態>, 《淑大史論》 3, 1968.

尹載秀, <高麗王朝의 婚姻攷>, 《石堂論叢》 11, 1986.

李相伯, <再嫁禁止習俗의 由來에 대한 研究>, 《李相伯著作集》 1, 을유문화사, 1978.

張炳仁, <조선초기 再嫁規制法의 시행경위>,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26-1, 1990; 《朝鮮初期 婚姻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조선 전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역사비평》 25, 1994.

崔淑卿, <高麗時代의 女性>, 《韓國女性史》 1, 이화여대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72.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조각, 1983.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일지사, 1983.

하게 규제하기보다 수절 권장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대부분 계층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재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sup> 더 나아가 조선시대에 유교적 도덕관에 의해 여성이 차별 받은 것과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가 '재가의 허용'이라 이해하고 있다.<sup>4)</sup> 이상과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고려시대 여성의 재가를 고려 이후의 사회와 비교하거나, 또는 재가가 허용된 사실 하나만으로 여성의 지위를 높게 파악하여 고려사회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어렵게 한다.

한편, 근래에는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고려시대처럼 '계급'이 발달한 사회에 있어 '계급내혼제'가 행해진 것은 자녀의 혼인에 대한 부모의 강력한 제약이 가해졌음을 의미하고, 배우자 선택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인 물질적 고려가 개입됨을 의미한다는 견해<sup>5)</sup>가 제출된 바 있다. 또한 특히 재가가 쉬웠다 해서 반드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사뭇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sup>6)</sup>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도 재가는 부차적으로 다뤄졌을 뿐이어서, 재가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너무나 부족하다.

혼인이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단순히 두 개인 간의 애정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혼인의 개념은 인류 역사상 매우 근래에 나타난 것으로서, 서구사회에서조차 이 개념은 19세기까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sup>7)</sup> 소위 귀족사회 또는 문벌

3) 이상백, 앞의 논문; 장병인, 앞의 논문, 1990; 최재석, 앞의 책; 金現璟, 〈高麗時代 再嫁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4) 최숙경, 앞의 논문; 김은파, 앞의 논문.

5) 김주희, 앞의 논문.

6) 권순형, 〈다시 생각하는 고려 여성의 지위〉, 《여성과 사회》 9, 창작과 비평사, 1998; 〈고려의 이혼과 재혼〉, 《민속학연구》 6, 1999; 본고에서는 이 의견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

7) 김주희, 앞의 논문, 2쪽.

사회라 일컬어지는 고려시대의 혼인은 가문간의 정략혼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혼인의 한 일면인 재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재가의 허용만을 강조했다. 고려시대 혼인의 특성과 연관 지어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또 사료에서 나타나는 재가 사례를 단순히 '재가 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사례가 담고 있는 이면의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墓誌銘》·《族譜》·《高麗史》 등의 기록을 가지고 고려시대 여성들의 재가를 통한 생활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고려시대를 대상으로 한 기록이 대부분 지배층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전 계층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재가 사례, 그 중에서도 지배계급 여성들의 재가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고려시대 여성의 재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 再嫁에 대한 인식

### 1. 高麗 以前 社會에서의 再嫁에 대한 인식

고려시대는 儒敎가 보급·발전되면서 再嫁·守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고려시대에 여성의 재가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역사란 결코 단절이 아니기에 고려시대를 들어가기에 앞서 고려 이전 사회에서 여성의 재가와 수절이 갖는 의미를 잠시 살펴보자.

《三國史記》·《三國遺事》 등의 사료에서 그려지는 고려 이전사회의 여성의 모습은 상당히 자유로워서, 金庾信의 부모인 舒玄과 萬明, 強首, 元曉와 瑤石公主 등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담을 찾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곳에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新羅 祗摩尼師今과 摩帝의 딸 愛禮夫人, 炤知麻立干과 捺已郡[경북 영주]사람 波路의 딸 碧花 등과 같이 정략혼의 사례도 있고, 여성들의 재가 및 수절·정절에 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新羅 桃花娘, 安吉의 두 아내, 百濟 都彌婦人 등의 이야기도 있다.

新羅의 25대 舍輪王[諡號 眞智大王]은 桃花娘이라는 민가의 여인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궁에 불러들여 범하려 했다. 그때 도화랑은 "여자가 지킬 일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감은 비록 제왕의 위엄으로써도 그 정조를 강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했다. 왕도 끝내 그녀를 꺾지 못하고 돌려보내게 된다. 그 후 그녀의 남편이 죽고 왕도 죽었는데, 죽은 왕의 혼이 와서 "남편이 없으니 이제 허락하여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녀는 부모의 허락을 얻어 수락한다.<sup>8)</sup>

이 이야기는 鼻荊郎의 탄생과 얽혀 설화적 요소가 강하지만, 도화랑의 말에서 一夫從事의 의지가 엿보인다. 비록 죽을지언정 남편을 두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이때부터 정절의식이 사회적 통념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령이 된 왕을 받아들였지만, 이때도 쉽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고한 뒤였으며, 부모 역시 임금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車得公(車得令公. 太宗武烈王의 庶子)이 密行차 武珍州에 이르렀을 때, 무진주의 관리 安吉은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성심껏 대접하였다. 그날 밤에 안길은 아내와 첩 세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손님인 거사를 모시고 자는 사람은 나와 한평생을 같이 늙을 거요.” 하자, 두 아내는 “차라리 당신과 같이 살지 못할지언정 어찌 남과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고, 다른 한 아내는 “당신이 만약 종신토록 함께 살기를 허락한다면 명령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며, 그대로 따랐다.<sup>9)</sup> 사료에서 안길의 두 아내는 평생을 건 남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과 동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百濟 都彌婦人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절을 지키고 있다. 도미는 백제 사람인데 그 아내가 천하절색인데다 절개가 굳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개루왕이 이를 시험해보기 위해 도미를 잡아들인 다음 신하를

8) “沙梁部之庶女 姿容艷美 時號桃花娘 王聞而召致宮中 欲幸之 女曰 女之所守 不事二夫 有夫而適他 雖萬乘之威 終不奪也 王曰 殺之何 女曰 寧斬于市 有願靡他 王戲曰 無夫則可乎 曰 可 王放而遣之 是年 王見廢而崩 後二年其夫亦死 浹旬忽夜中 王如平昔 來於女房曰 汝昔有諾 今無汝夫 可乎 女不輕諾 告於父母 父母曰 君王之教 何以避之 以其女入於房” (《三國遺事》卷1 紀異篇上 桃花女·鼻荊郎.)

9) “公著緇衣 把琵琶 爲居士形 出京師 經由阿瑟羅州〔今溟州〕 牛首州〔今春州〕 北原京〔今忠州〕 至於武珍州〔今海陽〕 巡行里閭 州吏安吉見是異人 邀致其家 盡情供億 至夜 安吉喚妻妾三人曰 今茲待宿客居士者 終身偕老 二妻曰 寧不並居 何以於人同宿 其一妻曰 公若許終身並居 則承命矣 從之” (《三國遺事》卷2 紀異篇下 文虎[武]王 法敏)

왕으로 꾸며 한밤중에 도미의 집으로 보냈다. 가짜 왕이 도미부인에게 도미와 내기에서 이겨 그대를 차지하게 되었다며 동침을 요구하자, 부인은 어찌 왕의 명을 어기겠느냐며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나온 뒤 여종을 변장 시켜 대신 들여보냈다. 왕은 도미부인에게 속은 사실에 노해 도미의 두 눈동자를 뽑고 배에 태워 강물에 떠내려 보낸 후 다시 부인에게 동침을 요구했다. 그녀는 몸을 정갈히 하고 오겠다고 하며 기지를 발휘해 도망쳐 나와 강가에 이르렀으나, 건너지 못해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으며 통곡을 하였다. 이때 어디선가 홀연히 조각배 한 척이 나타나 그녀 앞에 다달았다. 부인이 배에 오르자 배는 그녀를 싣고 泉城島에 이르니 그곳에서 눈이 먼 도미를 만났으며, 어려웠지만 둘이 함께 고구려 땅으로 가 평생을 마쳤다는 설화다.<sup>10)</sup>

위 사료에서 왕은 “무릇 부인의 덕은 절개가 굳고 행실이 결백한 것으로써 제일로 삼는다”라 하고 있고, 도미 역시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지만 제 아내만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여 부인의 절개를 자랑스러워하였다. 이것을 통해 고려 이전 사회에서도 부녀자의 덕 가운데 굳은 절개와 깨끗한 행실을 제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지금 남편을 이미 잃었으니, 홀몸으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을 통해, 만약 어쩔 수 없이 수절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

10) “都彌 百濟人也 雖編戶小民 而頗知義理 其妻美麗 亦有節行 爲時人所稱 蓋婁王聞之 召都彌與語曰 凡婦人之德 雖以貞潔爲先 若在幽昏無人之處 誘之以巧言 則能不動心者 鮮矣乎 對曰 人之情 不可測也 而若臣之妻者 雖死無貳者也 王欲試之 留都彌以事 使一近臣 假王衣服馬從 夜抵其家 使人先報王來 謂其婦曰 我久聞爾好 與都彌博得之 來日入爾爲宮人 自此後 爾身吾所有也 遂將亂之 婦曰 國王無妄語 吾敢不順 請大王先入室 吾更衣乃進 退而雜飾一婢子薦之 王後知見欺 大怒 誣都彌以罪 矐其兩眸子 使人牽出之 置小船 泛之河上 遂引其婦 強欲淫之 婦曰 今良人已失 單獨一身 不能自持 況爲王御 豈敢相違 今以月經 渾身污穢 請俟他日 薰浴而後來 王信而許之 婦便逃至江口 不能渡 呼天慟哭 忽見孤舟 隨波而至 乘至泉城島 遇其夫未死 掘草根以喫 遂與同舟 至高句麗蒜山之下 麗人哀之 巧以衣食 遂苟活 終於羈旅” (《三國史記》 권48 列傳8 都彌)

이유는 혼자의 몸으로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행히 도망가서 남편과 만났지만, 평생을 눈먼 남편과 객지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신분상승의 기회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킨 것이다.

고려 이전 사회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후 다른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서이지 여성들에게 정절·수절을 요구하는 것은 고려 이전시기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sup>11)</sup>

## 2. 再嫁에 대한 법제적 인식

고려시대 재가를 알아보기에 앞서 당시 재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고려시대 재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료는 《高麗史》다. 고려의 혼인은 고려의 법률, 일명 高麗律<sup>12)</sup>에 적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고려사》를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남편이 있는 여성이 떠나거나 재가한 것에 관한 기록이다.

---

1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고려 중·후기에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고려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유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일단 여기에서는 기사 자체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12) 高麗律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은 고려 독자적인 律 編纂說과 唐律準用說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중국계 율령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사회에 적용되었던 고려율에 대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제정·운용하였다는 입장에서 논고를 전개한 학자로는 朴文福, 田鳳德, 延正悅, 宋斗用, 辛虎雄 등이 있으며 같은 견해를 가진 일본학자는 淺見倫太郎, 武田幸男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율의 제정을 부정하고 唐律準用說을 펴고 있는 학자로는 朴秉濠를 비롯하여 일본 학자인 花村美樹, 仁井田陞, 北村秀人, 浜中昇 등이 있다. 한편 韓容根은 고려율이 당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신라율을 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도 하다. (辛虎雄, 《高麗法制史研究》, 국학자료원, 1995, 24쪽; 권순형, 〈고려시대 혼인제도의 범주와 사료에 대한 검토-『高麗史』 刑法志 혼인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8, 1997, 92쪽.) 본고에서 고려율에 대해 따로 언급하기엔 그 범위가 너무 크고, 재가의 본질이 가려질 우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견해가 있음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가기로 한다.

가-① 妻가 함부로 떠나가면 徒刑 2년이고 改嫁하면 流刑 2천리에 처한다.  
    妾이 함부로 떠나가면 도형 1년 반이고 개가하면 2년 반이며 (남의 처  
    첩을) 취하는 자도 죄가 같으나 유부녀인줄 알지 못했으면 죄를 주지  
    않는다. 《高麗史》 13)

가-② 만약 妻·妾이 함부로 떠난 경우에는 도형 2년에 처한다. 이로 인해  
    재가한 경우에는 2등을 가중한다. 《唐律疏議》 14)

가-③ 妻가 함부로 떠난 경우에는 徒刑 3년, 이로 인해 재가한 경우에는 流  
    刑 3천리에 처하고, 妾의 경우 각각 1등을 감한다. 모두 갈라놓는다.  
    취한 자도 죄가 같으나 유부녀인지 몰랐다면 죄를 주지 않고, 취한 뒤  
    에 알았다면 1등을 감한다. 《宋刑統》 15)

가-①은 그 立案 시기와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妻가 남편과 합의 없이 함부로 떠나가면 징역 2년, 그로 인해 改嫁하면  
유배 2천리로 처벌하고, 妾이 남편과 합의 없이 멋대로 떠나가면 징역 1  
년 반, 그로 인하여 개가하면 2년 반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인데, 이 사료  
를 통해 고려사회에서 여성 측이 이혼을 요구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고려의 법률체계에 직접적으로든 간접  
적으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唐律과 宋律에서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엄격했을 것으로 본다.<sup>16)</sup> 그래서 가-

13) "妻 擅去徒二年 改嫁流二千里 妾 擅去徒一年半 改嫁二年半 娶者同罪 不知有夫 不坐"  
(《高麗史》 志38 刑法 戶婚)

14) "卽妻妾擅去者, 徒二年, 因而改嫁者, 加二等" (《唐律疏議》 190條 戶婚 41 義絶離之)

15) "周顯德伍年柒月柒日 勅條 妻擅去者 徒參年 因而成嫁者 流參阡里 妾各減壹等 各離之  
娶者與同罪 如不知其有夫者不坐 娶而後知者減壹等" (《宋刑統》 戶婚 義絶離之)

16) 고려율이 중국률을 준용하고 모방하였다는 학설은, 대체로 《고려사》 형법지 서문에 나오  
는 기사에 근거로 한다. "고려 시대의 제도는 대개 당(중국)의 것을 도입한 것이 많  
았으며 형법을 만들 때에도 당나라(중국) 법률을 자체의 현실에 맞도록 참작하여  
적용하였다. ...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간요한 것은 취하여 한 시대에 시행하였다."

① 처벌조항은 어느 정도 지켜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남편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나가 재가한 경우[重婚]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혼·사별 후에 이뤄지는 재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혼·사별 후 재가한 여성은 어떠하였을까.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으로 고려 시대에 재가에 대한 규제를 찾기란 어렵다.

가-④ 穆宗 2年 10月 西京의 文武 3品 이상의 처로 과부로 있으며 수절한 자는 封爵하였다.<sup>17)</sup>

가-④는 3품 이상의 문무관의 처가 사별하였을 때 수절하면 봉작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3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처에게 먼저 수절을 요구하는 고려 정부의 정책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3품 아래 관리의 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봉작을 통해 수절을 3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처에게 장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재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뒤 수절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위 기사가 나온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규정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선 당시 고려사회에서 여성의 德 가운데 절개·수절이 제일의 덕목으로 권장되었지만, 재가 자체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래서 기존 연구자들은 정표정책을 포함하여 고려시대에는 정절의 미덕을 칭송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이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행해

---

[高麗一代之制 大抵 皆倣乎唐 至於刑法 亦採唐律 參酌時宜而用之 … 刪煩取簡 行之一時]" (《高麗史》志38 刑法1 序文) 그렇다 하여도 중국 법률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된 것은 아니라, 우리 풍토와 문화에 맞게 재구성했을 것이다. 고려는 이전부터 이어져온 고유의 토착적 율령이 있었을 것이며, 또 중국 법률의 실제 시행 여부도 의문이어서, 중국 법률을 그대로 따랐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법률의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시행여부를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

17) "穆宗二年十月 鎬京文武三品以上 妻寡居守節者封爵" (《高麗史》志29 選舉3 銓注 封贈之制)

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고려왕조의 재가·수절에 관한 정책은 고려 말에 와서야 비로소 체계적으로 법제화되고 있다.

가-⑤ 恭讓王 元年 9월에 都堂이 啓하기를, “散騎 이상 관원의 妻로서 命婦 (봉작을 받는 부인)가 된 자는 再嫁하지 말게 하고, 判事 이하 6품에 이르는 관원의 처는 남편이 사망한 지 3년 내에는 재가를 허락치 말 것이니, 위반자는 失節의 죄에 걸리게 하며 散騎 이상의 妾 및 6품 이상의 妻妾으로써 수절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門閭에 旌表를 하고 인하여 상을 하사하심을 더하소서.” 라고 하였다.<sup>18)</sup>

가-⑥ 恭 王 3年 5月 무릇 토지를 받은 자는 죽은 뒤에 그 처가 자식이 있어 守節하는 자는 全科를 傳受하고, 자식이 없이 수절하는 자는 반을 감하여 傳受하는데 본래 수절하지 않는 자는 이 한계에 두지 않는다.<sup>19)</sup>

가-⑦ 恭 王3年 8月 都評議使司가 上言하기를, (中略) 이상의 命婦로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개가한 자는 封爵을 追奪하고 30세 전에 과부로 수절하여 60세에 이르기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는 자는 삶과 죽음을 논하지 말고 旌門을 세우고 復戶(免稅)하였다.<sup>20)</sup>

가-⑤의 기사에 散騎 이상의 처로서 명부에 이른 자는 재가를 금하며, 判事 이하 6품 이상 처의 경우에 喪期 3년 안에 재가를 하면 失節로 여기고, 산기 이상의 첩 및 6품 이상의 처첩이 수절하면 旌表하겠다는 규

18) “恭 王元年九月 都堂啓 散騎以上妻 爲命婦者 母使再嫁 判事以下 至六品妻 夫亡三年 不許再嫁 違者坐以失節 散騎以上妾及六品以上妻妾 自願守節者 旌表門閭仍加賞賜.”(《高麗史》志38 刑法1 公式 戶婚)

19) “恭 王三年五月 凡受田者 身死後其妻有子息 守信者 全科傳受 無子息受 {守}信者 減半傳受 本非守信者 不在此限”(《高麗史》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20) “(恭 王3年) 都評議使司上言 (中略) 已上命婦夫亡改嫁者追奪封爵三十歲前守寡至六十歲不失節者勿論存沒旌門復戶”(《高麗史》志29 選舉3 銓注 封贈之制)

정은 이전 수절에 대한 봉작제도에 비해 재가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산기 이상 처의 재가만을 '실절'로 규정하여 논죄한다 하고, 판사 이하 6품 이상 처의 喪期 이후 재가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sup>21)</sup> 그러다가 同王 3년 5월에 오면 좀 더 강력한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가-⑥의 기사는 땅을 받은 자가 죽은 후에 그 아내가 수절을 하면 남편의 과전을 받을 수 있지만, 수절하지 않으면 여기서 제외시킨다는 재가규제에 대한 고려왕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8월이 되면 재가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는데, 命婦로 과부된 자가 재가를 하면 봉작을 추탈하는 규정 외에 30세 이전에 과부가 되어 60세에 이르기까지 失節하지 않는 자는 旌門을 세우고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즉, 위와 같은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수절을 이상적 덕목으로 여겨 권장했을 뿐 직접적으로 재가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었다. 그러다 고려 말 공양왕대에 이르러서는 봉작의 추탈이나 토지상속에서의 제외 같은, 보다 적극적인 재가 규제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멸망으로 시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위 조항의 또 다른 한계이다.

가-⑧ 文宗 22年 10月, 改嫁한 어머니의 喪은 이전에는 服制가 없어서 사람의 子息이 그 喪服을 입지 아니하면 자식을 낳아 기르신 부모의 은혜를 잇는 것 같으니 이제부터 100일 동안 상을 치른 후 吉服으로 正角에 出仕하도록 한다.<sup>22)</sup>

가-⑨ 宣宗 6年 12月, 改嫁한 어머니의 服制는 이전에는 다만 100일간의 휴가를 주고 그 외에는 心喪케 하였으나 개가한 어머니는 스스로 구별이

21)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벗어난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재가가 자유로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2) "二十二年十月 制 嫁母之喪 前式無服 然人子 不服其喪 似忘劬勞膝下之恩 自今 行百日服後 以吉服正角出仕" (《高麗史》志18 禮 凶禮 五服制度)

있어야 할 것이니 그 大祥祭에는 지방에 재직한 아들이 上京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하였다.<sup>23)</sup>

후대로 갈수록 재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五服制度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⑧ 文宗22년(1068)의 기사는 개가한 어머니에 대해 100일간의 복제를 정하여 행하도록 한데 반해, 가-⑨ 宣宗6年(1089)의 기사는 개가한 어머니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방에 재직한 아들이 상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즉, 재가한 어머니에 대한 喪禮를 수절을 지킨 어머니 보다 낮게 표현하여 재가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불과 20여년 사이의 일이지만, 그만큼 고려 사회가 유교적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법제적 접근을 통해 살펴본 바, 고려시대는 여성의 재가에 대해 법률로써 규제하는 직접적인 방법보다 수절·절개의 권장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공양왕대에 일련의 재가규제법이 발표되었지만, 이것이 고려사회에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그 규정 또한 상층귀족만이 해당될 뿐 하층관리나 일반 서민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려사회에서 수절은 형식적으로만 인식되었고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가는 失節로 취급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것<sup>24)</sup>이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당시 수절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간접적인 권고 정도로 치부할 만큼 미약하고 단순했을까는 의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녀자의 절개와 바른 행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한 것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며, 비록

23) "宣宗六年十二月 制 嫁母之服 前制 只給百日暇 其餘心喪 嫁母自有區別 其大祥祭 外任之子 勿許上京" (《高麗史》志18 禮 凶禮 五服制度)

24) 최재석, 앞의 책.

규정된 범규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가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고려시대와 같은 전근대사회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성문화된 법체제보다 이전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회적 통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再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가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재가의 절차와 의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혼을 하거나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은 수절을 하기도 하지만, 재가를 선택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한다.

나-① 장녀 貴姜은 興威衛錄事 崔國輔에게 시집갔는데, 최씨가 죽자 집에 돌아와 있었다.<sup>25)</sup>

나-② 공은 10세에 부친을 잃었다. 大夫人은 작고한 禮賓卿 高佺公의 딸로 영광에서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왔다.<sup>26)</sup>

나-③ 끝의 누이가 千戶 方思桂에게 시집갔었는데, 버림을 받고 돌아갈 곳이 없자 선생이 데려다가 한 집에서 몇 해를 살았다. 사계가 다시 맞이하고자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의리 없이 버리고서 또 무례하게 데려간다면 반드시 다시 버릴 것이다.” 하고 끝내 보내지 않고 자애와 화목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sup>27)</sup>

나-④ 공에게는 과부가 된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따스하게 보살피는 것이

25) “一女曰 貴姜 適興威衛錄事崔國輔 崔氏亡 還在室” (《高麗墓誌銘集成》崔婁伯 妻 廉瓊愛 墓誌銘)

26) “公年十歲而孤 大夫人 故禮賓卿高公諱佺之女也 靈光挈孤以歸” (《高麗墓誌銘集成》金台鉉 墓誌銘)

27) “季妹有適千戶方思桂者 見棄無所歸 先生迎之家 同鼎食有年 思桂更欲迎歸 先生云 棄以不義 迎又無禮 歸必復棄矣 遂不歸 慈睦愈厚” (《治隱集》吉再 行狀)

마치 자식과 같았다.<sup>28)</sup>

위 사례를 보면, 이혼을 하거나 과부가 된 여성들은 일단 친정으로 돌아왔다. 이외에 정중부의 딸(라-①)도 남편과 사별 후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다. 친정에 부모가 없고 오라버니 부부만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이혼 또는 과부가 된 여성은 일단 친정에 와 있다가 재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29)</sup> 이때 과부가 된 여성은 前夫의 자식들도 함께 데리고 와 친정에서 생활했던 것 같다. 나-②의 김태현은 어머니를 따라 외가로 갔고, 이승장은 재가한 어머니를 따라 의부 밑에서 자랐다.(바-①) 또 廉興邦과 異父兄 李成林에 관한 기사를 보면, 둘 사이가 친형제와 다름없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sup>30)</sup> 이것은 고려 가족제도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나-⑤ 《高麗末和寧府戶籍 斷片》 다섯째 폭 戶主 金多式<sup>31)</sup>

戶主 金多式 70歲

戶妻 四可伊 60歲

1男 金海 20歲

2男 玄奇 14歲

同金海同母異父兄 李坦 30세

妻 祿莊 30세

위 사례를 통해 호주 김다식의 처는 前夫와의 자식인 이단을 데리고

28) “公口有寡妹一人奉養殷勤”(《高麗墓誌銘集成》王瑛 墓誌銘)

29) 최재석, 앞의 책, 235쪽.

30) “염홍방의 異父兄 이성립을 侍中으로 삼았다. [以興邦異父兄成林 爲侍中]”(《高麗史》列傳39 姦臣 林堅味); “염홍방은 일전에 異父兄 이성립과 고향 집에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다. [興邦 嘗與異父兄李成林 上蟻而還]”(《高麗史》列傳39 姦臣 廉興邦); “이성립은 異父弟 염홍방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바, 그가 극력 구원해서 죽는 것을 면하고 장형을 받고 烽卒로 유배되었다. [成林異父弟廉興邦 亦有寵於王 力救免死杖配烽卒]”(《高麗史》列傳37 嬖幸 金興慶)

31) 최재석, 앞의 책, 234쪽;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서울대출판부, 2000, 263쪽.

현재의 남편인 김다식과 재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형제라면 비록 아버지는 다르더라도 친형제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이혼 혹은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前夫 소생 자녀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다가 중매로 재가하였다. 고려시대의 혼인은 지배층의 경우 집안 어른에 의해 중매로 결정되어야 했으며 당사자 간의 자유혼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 혼인을 하는 데는 일정한 의식이 있어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sup>32)</sup> 예컨대 靖宗은 죽을 때 유언으로 盧氏에게 延昌宮을 주도록 했으나 신하들은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대하였다.<sup>33)</sup> 문종은 결국 아버지의 유언대로 노씨에게 연창궁을 주기는 했지만, 중매나 의식을 거치지 않은 혼인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혼인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혼인의 첫 단계인 議婚에서는 主婚者가 중매인을 통하여 혼사를 진행하였다. 혼인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현대 혼인규정과 달리 고려시대의 혼인은 일부의 재가 사례를 제외하고, 혼인 당사자보다 주혼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것은 혼인 당사자의 결합으로서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보는 관념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혼 다음 단계인 納采란 혼인할 양가에서 의혼과정을 통해 이미 혼인할 것을 합의한 후 신랑측 혼주가 신부 집에 혼인을 청하는 서식을 보내는 절차로서, 일종의 청혼 절차라 볼 수 있다. 그리고 納幣란 혼인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혼인날이 결정된 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婚書와 幣帛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혼례

32) 권순형, <고려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33) “延昌宮主盧氏 未詳世系 初靖宗聞其美 潛納宮中 遂專房宴 文宗立 以遺命 賜盧氏延昌宮 門下省及御史臺駁奏 盧氏納不以禮 且先王亂命不可從也 王終不允” (《高麗史》列傳1 后妃 靖宗)

의 마지막 단계인 成禮는 서류부가체에 따라 처가에서 치러졌다.<sup>34)</sup> 서류 부가의 혼인풍속에 따라 별다른 의식 없이 혼인 첫날 신랑이 신부와 동침하도록 하였다. 다음날에는 친척과 친지 및 기타 하객들에 대한 잔치를 벌이며, 셋째 날에 비로소 신랑과 신부의 정식 상견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적당한 날을 잡아 신랑의 부모를 찾아뵈었다. 그리고 이 4례 중 납폐까지의 혼인절차를 마치면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혼인 당사자는 성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성례 이전이라도 가족관계에서 혼인관계에 준하는 법적취급을 받게 되었다.<sup>35)</sup>

재가의 절차도 일반 혼인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재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중매자를 통하였다.

나-⑥ 禡王 2년에 贊成事 池籛이 王重貴의 妻 奇氏를 아내로 삼으려고 여러 번 중매자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sup>36)</sup>

나-⑦ 黃裳은 아버지 忌日에 元氏와 결혼하였다. 원씨 역시 世家의 딸로서 남편이 죽은 후 喪期를 마치기 전에, 그리고 중매 없이 황상에게 출가한 까닭에 헌사에서 규탄해 모두 매를 쳐서 먼 곳으로 보낼 것을 제의하였다. 왕은 듣지 않고 원씨를 귀양 보내는 데 그쳤다.<sup>37)</sup>

34) 혼인예식은 왕실의 경우 納采, 納幣, 親迎 등 중국식 혼인 의례가 보인다. 이는 중국 고대 이래의 혼인 풍속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시대에 왕실에서 시행된 예가 있다. 그러나 귀족이나 서민들의 경우 친영이 행해지지 않고 처가에서 혼인식을 올리는 婿留婦家婚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권순형, <고려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115쪽.)

35) 장병인, <조선 전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역사비평》 25, 1994, 91쪽.

36) "辛禡二年 贊成事池籛 欲娶重貴妻奇氏 數行媒不應" (《高麗史》列傳23 諸臣 王熙 王重貴)

37) "裳於父忌日 娶元氏 元氏亦以世家女 夫死未期 無媒嫁裳 憲司劾之 請杖流遠州 禡不許止流元氏" (《高麗史》列傳27 諸臣 黃裳)

나-⑥, ⑦을 보면 재혼 역시 초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⑧에서 김문비의 처가 김혼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예법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혼인할 경우는 나-⑦에서처럼 규탄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았다. 고려사회는 재가할 때 초혼과 마찬가지로 예법을 지킬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몇몇의 남성이나 여성이 권력을 이용해 재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에 의해 주도되는 중매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②에서는 충렬왕이 정치적 이유로 며느리인 계국대장공주를 재가시키려 하였고, 다-⑧에서 조염경은 사위 김홍기가 죽자 자신과 집안의 안위를 위해 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가를 주도하였다. 또 라-④에서는 어머니가 주혼자로 딸 윤씨를 서의에게 재가시키고 있다.

혼인을 성립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혼자는 혼인이 불법적으로 행해 졌을 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⑧ 奇世傑의 妻 房氏는 評理 房彦暉의 딸이다. 기씨 가문이 멸망하자 金 鏞이 방언휘를 협박 유인해서 방씨를 간음했으나, 방씨는 유부녀인 까닭에 김용도 감히 제처로 삼지 못하고, 그의 문객인 正言 崔守雌의 처로 주었다. 그 후 김용이 귀양 가자 왕이 방언휘와 최수자를 순군에 가두고 곤장 쳤다.<sup>38)</sup>

나-⑧에서 방언휘는 딸이 불법적으로 재가한 것에 대해 주혼자로서 벌을 받고 있다.<sup>39)</sup> 또 마-④에서 채인규는 딸인 임유인의 처 채씨가 불

38) "世傑妻房氏 評理彦暉女也 奇氏既滅 金鏞 脅誘彦暉 私房氏 以其有夫 不敢自恣 乃與其門客正言崔守雌 爲妻 及鏞流 王繫彦暉守雌 杖之" (《高麗史》列傳44 叛逆 奇轍)

39) 가-①의 처벌조항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성은 마음대로 떠나가 개가를 할 수 없다. 방씨는 남편 기세길이 있는데도 최수자에게 재가한 것이니, 주혼자로서 아버지 방언휘가 처벌받는

법적으로 우정에게 재가한 것에 연좌되어 귀양을 갔다. 이로써 주혼자가 그 혼인에 대하여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가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혼이나 남편과 사별 후 과부가 된 여성들은 시댁에 머물지 않고 자식과 함께 친정에 돌아와 있다가, 이후 절차와 예법에 따라 재가하였다. 고려사회에서 재가를 할 때 초혼과 다름없이 혼인의례를 중요시하였다. 중매를 통하여 주혼자에 의해 혼인이 이뤄졌으며, 여러 가지 혼례 절차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례를 따르지 않고 재가를 하면, 재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혼자까지 처벌받았다. 이처럼 재가의례를 중시하는 것은 재가도 혼인의 한 범주로 여겼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고려시대 재가·수절에 대한 인식은 旌表政策에서도 드러난다.

《고려사》를 보면 成宗 9년 이후부터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孝子·順孫·義夫·節婦 등에게 旌表하여 풍속을 권장한다는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sup>40)</sup>

成宗 9年(990) 9월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 6經의 대의를 본받고 三禮의 규례에 의거하여 일국의 풍속을 다 五孝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려 한다. 근래에 使節들을 6道에 파견하여 노인과 어린아이로 굶주리고 유리

것으로 보인다.

40) 정표사례는 成宗代 이후에서 고려 말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무신정권 이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아마 비정상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세력에게 유교적 덕목을 요구하기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

<표1> 《高麗史》 정표 사례

시기	成宗	穆宗	顯宗	文宗	肅宗	睿宗	仁宗	毅宗
횟수	2	1	2	3	1	5	8	2
시기	高宗	元宗	忠宣王	忠肅王	恭愍王	禔王	恭王	총횟수
횟수	1	1	1	1	2	1	1	32

\*\* 義夫·節婦를 위주로 작성함.

하는 것을 구휼하고, 홀아비와 고아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며, 孝子·順孫·義夫·節婦를 찾으니 다음과 같은 사례가 나온다. (後略)<sup>41)</sup>

정표정책은 위의 기사에도 나오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교적 덕목을 실행하는 자들을 표창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려사》에 기록된 정표사례는 성종 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나라에 변고가 생겼을 때도 여러 사면과 함께 발표되고 있다.

정표정책을 통해 고려 왕조는 여성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孝는 물론이고, 특별히 守節과 節概가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再嫁하는 여성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守節과 節概가 여성들이 지녀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인식시킴으로써, 당시 자리 잡기 시작한 유교적 질서를 확대하고자 한 일면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으로, 고려시대의 정표정책은 貞節을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義夫'<sup>42)</sup>라고 하여 남성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부부 서로가 지켜야

41) "九年 秋九月 丙子 教曰 … 是以取則六經 依規三禮 庶使一邦之俗 咸歸五孝之門 頃者遣使六道 頒示教條 恤老弱之饑離賑 鰥孤於窘乏求 訪孝子·順孫·義夫·節婦 (後略)" (《高麗史》卷3 世家 成宗 9年 9月)

42) 義夫는 '나라에 의로운 일을 한 사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義夫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高麗史》·《朝鮮王朝實錄》에는 孝子·順孫·義夫·節婦 등으로 나열만 되어있을 뿐, 별다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忠臣으로 對蒙抗爭에서 충절을 지켜 殉節한 경우, 對倭寇에서 순절한 경우, 李資謙 또는 辛旽의 난에 충절을 지키고 순절한 경우, 三別抄 亂에 순절한 경우, 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킨 경우 등에 표창한 기사가 보여서, 나라에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新唐書》에도 "不然, 天下義夫節士 畏禍伏身 誰肯與陛下共治耶?" 의 기사가 보이고 있다. 아마도 義夫之節처럼 단독으로 義夫만 나오면 義士·烈士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필자는 《宋史》와 《金史》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宋史》의 "削木爲主 大書曰, 自古以來 忠臣孝子義夫節婦之位 歲時祀之"라는 기록과 《金史》의 "兵興以來 忠臣烈士孝子順孫義夫節婦 湮沒無聞者甚衆"라 기록이 그것이

할 쌍방의 덕목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孝子·烈女를 旌表의 주 대상으로 하는 조선시대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절에 대한 덕목은 왕실의 여성들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獻貞王后 皇甫氏가 景宗 死後에 私第에 나가 살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데, 아들을 낳으면 한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점괘에, "나는 이미 과부가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겠는가?"<sup>43)</sup>라고 하였다. 이후 安宗과 간통하여 顯宗을 출산하기는 했지만, 재가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忠肅王의 妃이며 忠惠王·恭愍王의 母인 明德太后 洪氏는, 미망인이 어찌 감히 外僧과 같이 앉겠느냐며 연회에서 辛旽에게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다.<sup>44)</sup> 이 경우 엄격한 內外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신돈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같이 있던 공민 왕조차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부녀자가 갖춰야 할 당연한 덕목이었던 것이다. 이밖에 王重貴의 妻 奇氏는 남편이 죽은 뒤, 자신을 강제로 취하려는 池籬에게 "소위 재상이라는 자가 이 같은 강포한 행동을 하느냐?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 말을 들을 줄 아는가?"<sup>45)</sup>라고 하여 강력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다.

수절과 절개를 여성의 미덕으로 삼은 것은 《墓誌銘》에서도 나타난다. 沃溝郡大夫人 高氏는 명문가의 여성으로 절개 있는 지어미와 자애로

---

다. 이 두 사료를 보면, 忠臣과 義夫는 분명 별도의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록에도 그렇지만, 義夫는 언제나 節婦와 나란히 나오고 있다. 여기에 孝子·順孫·節婦가 모두 가족제도 테두리 안의 존재들인 것으로 보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의로운 남편', '훌륭한 남편', '아내가 죽은 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43) "我既寡 何以生子"(《高麗史》列傳1 后妃 景宗妃 獻貞王后)

44) "十五年 德寧公主享后于文睿府 時辛旽方得幸 勢甚熾 從王人見 后不賜坐 旽趨出 王曰 僉議 國之柱石 何不賜坐 后正色曰 吾未亡人 安敢與外僧共坐 王默然" (《高麗史》列傳2 后妃 忠肅王妃 明德太后)

45) "宰相有如此強暴之行耶 寧死從汝乎" (《高麗史》列傳23 諸臣 王煦 王重貴)

운 어머니였음을 기록하고 있고,<sup>46)</sup> 平原郡夫人 元氏는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일찍 寡婦가 되었지만 처신함에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예로써 스스로 지켜서[以禮自守] 一門에서 칭찬이 자자했다<sup>47)</sup>고 적고 있다. 또 高麗三韓國大夫人 李氏도 남편이 죽은 후 40년 동안 과부로 절개를 지켰다<sup>48)</sup>고 칭송하고 있다. 한편 수절에 관한 것은 아니나 洪奎[初名 文系]의 妻 三韓國大夫人 金氏는 비록 親兄弟라 할지라도 문지방을 넘어 함께 말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몸가짐을 엄격히 하고 있다.<sup>49)</sup>

고려시대 《묘지명》에 보이는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을 살펴보면 재가한 경우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sup>50)</sup> 과부가 될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았던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sup>51)</sup>, 재가의 유무를 떠나 이미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수절과 정절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가한 여성이 스스로를 가리켜 “정절에 부끄러움을 당했다[見愧栢舟]”<sup>52)</sup>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가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적 규제는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수절·정절에 대한 인식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혼인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통과의례를 맺는 의식으로, 그 중요성은 초

46) “大夫人 以名家女 爲節婦慈母” (《高麗墓誌銘集成》 金須 妻 高氏 墓誌銘)

47) 《高麗墓誌銘集成》 朴居實 妻 元氏 墓誌銘.

48) “井邑府君卒 守寡四十年” (《高麗墓誌銘集成》 李自成 妻 李氏 墓誌銘)

49) “雖親兄弟 未嘗踰闕 與之言” (《高麗墓誌銘集成》 洪奎의 妻 三韓國大夫人 金氏 墓誌銘)

50) 金永夫의 長女(《韓國金石文追補》 金永夫 墓誌銘), 李勝章의 母(《高麗墓誌銘集成》 李勝章 墓誌銘), 安輔의 妻(《高麗墓誌銘集成》 安輔 墓誌銘), 忠宣王妃 順妃(《高麗墓誌銘集成》 忠宣王妃 順妃 許氏 墓誌銘) 정도 보인다.

51) 고려 묘지명에 나오는 재가하지 않은 여성 27명 중에서 남편 사망시 여성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2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이 20대, 1명이 30대, 5명이 40대, 9명이 50대, 2명이 60대, 2명이 70대에 과부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경, 앞의 논문, 8쪽, 주17)

52) 《高麗墓誌銘集成》 李勝章 墓誌銘.

혼뿐만 아니라 재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고려시대는 재가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절차와 의례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고려사회가 문벌·귀족제 사회였음을 생각하면, 재가라고 해서 함부로 성사되지 않았으리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쉬웠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선과의 비교를 통해서일 뿐이다. 고려시대 유교가 정착되면서, 수절·정절이 여성의 중요한 미덕으로 자리 잡아 가고, 비록 재가를 강력하게 규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재가 한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있었다. 이렇듯 고려왕조는 유교이념에 입각해서 재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수절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무신집권 이후에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고려 중·후기가 되면 재가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Ⅲ. 再嫁의 사례<sup>53)</sup>

#### 1. 정치적·정략적 성격의 재가

재가 사례는 대부분 《고려사》와 《묘지명》에 실려 있다. 특히 《고려사》는 사료의 성격상 정치적·정략적 성격의 사례가 많은데, 왕실뿐 아니라 일반 지배계급 여성의 재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가 사례 중 가장 정치적·정략적 성격의 재가는 아마도 왕실의 재가일 것이다.

시대와 사회, 그리고 계급을 막론하고 여성이 재가를 하려면 이혼을 하거나 과부여야 가능하였다. 고려시대엔 정치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치상황에 따라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로, 이는 처계나 모계를 통해서 특권을 받거나 형벌에 연좌될 수 있었던 당시의 친족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왕족은 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였다. 아래 <표2>에서 보이는 총 4건의 이혼사례 중 3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혼하였다.<sup>54)</sup> 인종 때 폐위된 두 왕비는 아버지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康宗의 왕비인 愍平王后는 아버지인 권신 이의방이 죽자 폐출되었다.

---

53) 재가의 사례분석과 관련하여, 본고의 재가 사례 발췌 방법에 대해 먼저 언급하도록 한다. 고려시대 재가 사례는 대부분 《고려사》·《묘지명》에 나온 기록들이다. 그리고 두 사료에 나오는 재가 사례들은 이미 많은 곳에서 소개되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미 소개되어 알려진 사료 외에, 또 다른 사료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특이할 만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본고에 소개된 《고려사》·《묘지명》의 사례들은 여러 연구 등에 흩어져 인용된 사례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는 두 사료 외에 《安東權氏 成化譜》와 《文化柳氏 嘉靖譜》에 기록된 재가 사례가 있다. 이것은 두 족보에 기록된 고려시대의 인물 및 고려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재가 사례를 뽑아 직접 표로 만든 것이다.

54) 이혼 사유가 확실하지 않은 선희왕후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치적 이유로 이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고려시대 왕실의 이혼 사례<sup>55)</sup>

시기	이혼의 내용	이혼원인	출전
문종	문종이 며느리를 미워해 내쫓음	?	《高麗史》 后妃傳 宣禧王后 金氏
인종	이자겸 난으로 폐비	정치	《高麗史》 仁宗世家 4년6월 을묘
명종	은평왕후 이씨 이의방 사후 폐비	"	《高麗史》 后妃傳 恩平王后 李氏
공민왕	사돈(안극인)이 馬巖의 役事를 불가하다고 간하자 부인을 쫓음	"	《高麗史》 后妃傳 定妃 安氏

그러면 이혼한 왕비들과 사별한 왕비들은 재혼을 했을까. 고려에서 왕비가 재혼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일단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혼한 경우는 재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다. 더구나 폐비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시대 왕실혼이 정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왕비의 지위는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게 연결된 중요한 자리였으므로, 왕의 사후 왕실을 떠나 재가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모범이 되어야 할 왕실에서 왕비의 재가는 국가와 지배층에서 원하는 유교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 기사는 이를 잘 말해 준다.

다-① 獻貞王后 皇甫氏는 戴宗의 딸인 바 景宗이 죽자 대궐에서 나와 왕릉사 남쪽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꿈에 鶴嶺에 올라 소변을 누었더니 소변이 흘러 온 나라에 넘쳤으며 그것이 모두 변해 온 바다가 되었다. 이 꿈을 깨고 점을 치니 '아들을 낳으면 왕이 되어 한 나라를 가지게 되리라'고 말하였다. 왕후가 '나는 이미 과부가 되었으니 어찌 아들을 낳겠는가'라고 말했다.<sup>56)</sup>

55) 권순형, <고려의 이혼과 재혼>, 《민속학연구》 6, 1999, 8쪽 <표1> 인용.

56) "獻貞王后皇甫氏 亦戴宗之女 景宗薨 出居王輪寺南私第 嘗夢登鶴嶺旋流溢國中 盡成銀海 卜之曰 生子則王有一國 后曰 我既寡何以生子" (《高麗史》 列傳1 后妃 景宗 獻貞王后 皇甫氏)

다-①에서 경종 사후 사가에 나가 살던 헌정왕후가 '나는 이미 과부가 되었으니 어찌 아들을 낳겠는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재혼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녀의 집이 安宗의 집과 가까워 자주 왕래하다 간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왕의 사후라도 왕비의 간통은 용납되지 않아서 간통한 사실이 알려지자 헌정왕후는 부끄러워하며 울었고, 안중은 유배되었다. 順宗妃 長慶宮主 李氏도 왕 사후 外宮에 거처하면서 宮奴와 간통해 폐비되었다.<sup>57)</sup> 왕비 중 재혼 이야기가 언급된 적은 다음 忠宣王妃 薊國大長公主의 사례가 유일하다.

다-② 薊國大長公主 寶塔實憐은 元의 晉王 甘麻刺의 딸로 忠烈王 22년에 忠宣王이 세자로 원나라에 있을 때 혼인하였다. ... 충렬왕 27년에 충렬왕이 都僉議使司 閔萱을 파견하여 공주를 재가시킬 것을 제의하였으나 민훤이 감히 그 서신을 올리지 못하고 돌아왔다.<sup>58)</sup>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충선왕비 계국대장공주의 재가시도는 시아버지인 충렬왕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충렬왕과 충선왕간의 대립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거론된 것일 뿐이었다. 이처럼 왕비들의 재혼은 힘들었지만 재가녀가 왕비가 된 경우는 있다.

다-③ 成宗의 妃 文德王后 劉氏는 光宗의 딸로, 처음에 弘德院君에게 시집갔다가 뒤에 成宗의 妃가 되었다.<sup>59)</sup>

57) 헌정왕후와 자매간인 獻哀王太后 皇甫氏는 아들 목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자신이 섭정하면서 外族이던 金致陽과 간통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정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태후가 섭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58) "薊國大長公主 寶塔實憐 元晉王甘麻刺之女 忠烈二十二年 忠宣以世子在元 尙主 ... 二十七年 忠烈 遣都僉議司使閔萱 表請改嫁公主 萱不敢進而還" (《高麗史》列傳2 后妃 忠宣王 薊國大長公主)

59) "成宗 妃...文德王后劉氏 光宗之女 初適弘德院君 後配成宗" (《高麗史》列傳1 后妃1)

다-④ 恭睿太后 任氏는 中書令 任元厚의 딸이요, 門下侍郎 李璋의 외손녀이다. … 성년(15세)이 되어 평장사 金仁揆의 아들 金之孝와 약혼하였는데, 혼례 날 밤에 김지효가 신부 집 대문에 이르니 妃가 갑자기 병이 나서 거의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혼을 사절하고 신랑을 돌려보냈다. … 왕이(仁宗) 이미 이자겸의 두 딸을 내보내고, 인종 4년에 임씨를 선택하여 궁중에 들어오고 延德宮主라고 불렀다. 5년(1127)에 毅宗을 낳았고, 7년에 왕비로 책봉하였다.<sup>60)</sup>

다-⑤ 順妃 許氏는 孔巖縣人이니 中贊 許珙의 딸로, 일찍이 平陽公 王暉에게 시집가서 3남 4녀를 낳았다. 王暉이 죽으매 忠烈王 34년에 忠宣王이 이를 들었으며, 즉위함에 미처서 順妃로 책봉하였다.<sup>61)</sup>

다-⑥ 淑昌院妃 金氏는 衛尉尹으로 致仕한 金良鑑의 딸로 자태가 아름다웠다. 일찍이 進士인 崔文에게 시집갔다가 젊어 과부가 되었다. 齊國公主가 薨하자 세자였던 忠宣王이 궁녀 無比가 왕(忠烈王)의 사랑을 독차지함을 미워하여 이를 베고 忠烈王의 뜻을 위로하여 풀고자 김씨를 들이고 뒤에 淑昌院妃로 封하였다.<sup>62)</sup>

다-③ 成宗妃 文德王后 劉氏는 처음에 弘德院君에게 시집갔다가 뒤에 成宗妃가 되었다. 문덕왕후의 외조모인 神靜王太后 皇甫氏는 太祖와의 사이에 戴宗 王旭과 大穆王后 皇甫氏를 낳았다. 成宗은 대종과 宣義太后 柳氏의, 문덕왕후는 光宗과 대목왕후의 소생이다. 좀 더 살펴보면, 문덕

---

成宗妃 文德王后 劉氏)

60) "恭睿太后任氏 中書令元厚之女 門下侍中李璋之外孫 … 及笄平章事金仁揆子之孝 聘之婚夕之孝至門 妃暴疾幾死 乃謝遣 … 王既出資謙二女 四年 選入宮 號延德宮主 五年生毅宗 七年 冊爲王妃" (《高麗史》列傳1 后妃1 仁宗妃 恭睿太后任氏); 恭睿太后的 納妃와 관련하여, 方喜垠, <高麗 仁·毅宗代 定安任氏의 政治的 動向에 대한 研究-恭睿太后任氏 納妃를 中心으로->, 《역사학 논총》, 동선사학회, 2003, 9쪽~124쪽 참조.

61) "順妃 許氏 孔巖縣人 中贊珙之女 嘗嫁平陽公暉 生三男四女 暉死 忠烈王三十四年 忠宣納之及即位 冊爲順妃" (《高麗史》列傳2 后妃2 忠宣王)

62) "淑昌院妃金氏 尉衛尹致仕良鑑之女 有姿色 嘗嫁進士崔文 早寡 齊國公主薨 忠宣爲世子 疾幸 姬無比專寵 斬之 欲慰解忠烈意 以金氏納之 後封淑昌院妃" (《高麗史》列傳2 后妃 忠烈王)

왕후와 같은 부모의 소생인 景宗은 대종의 두 딸인 獻哀王太后 皇甫氏, 獻貞王后 皇甫氏과 결혼하였으며, 성종은 선의태후를 일찍 여의고 조모인 신정왕태후에게서 자랐다. 즉 성종과 문덕왕후 사이에는 '皇甫'라는 고리가 굳게 연결되어 있었다. 弘德院君 王圭는 태조와 獻穆大夫人 平氏의 소생인 壽命太子의 아들이다. 문덕왕후가 처음에 흥덕원군에게 시집을 갔지만 황보씨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런 혼사였을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해줄 상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별인지 이혼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경종 사후 성종과의 연결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정략적인 방편으로 성종과의 결혼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다-④ 恭睿太后 任氏는 定安人 任元厚의 딸로, 毅宗·明宗·神宗의 親母이다. 위 기사를 보면 공예태후는 仁宗과 혼인하기 전에, 慶州人 金之孝와 약혼했다가 혼례일에 취소한 것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唐律疏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남편이란, 《禮記》에 의하면, 결혼한 지 3개월 후 廟見을 거친 남편과, 아직 廟見을 거치지 않은 남편, 또는 婚姻行事 중의 남편 등 3종의 남편이 있으나, 모두 (확정된) 남편에 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혼인할) 길일을 택한 남편 및 정혼한 남편 등과 혼인 약속을 어기고 개가할 수 없다.<sup>63)</sup>

이 규정에 따르면, 공예태후는 이미 김지효와 혼인을 한 것이 된다. 그리고 당시 혼례절차가 진행되면 혼인이 성사된 것과 동일시하던 풍조를 고려해도 재가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사》에는 꿈 이야기나 卜人의 점이야기 등이 더해져서 공예태후가 왕후가 될 것을 예언

63) “夫者 依禮 有三月廟見 有未廟見 或就婚等三種之夫 竝同夫法 其有克吉日及 定婚夫等 唯不得違約改嫁”(《唐律疏議》第6條 名例 6 十惡)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納妃의 당위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징적이고 극적인 상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납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보다 현실적인 원인이 따로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64)</sup> 당시 이자겸의 몰락이라는 권력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뤄진 납비였다고 생각되므로, 일반적인 재가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이자겸의 두 딸이 폐출된 상황에서 이뤄진 혼사라면 그 중요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⑤ 기사는 여성의 재가를 다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료이다. 즉, 이미 한번 결혼하여 3남4녀를 둔 과부가 왕에게 재가한 것은, 당시 여성이 재가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그만큼 자유로웠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고려사》를 보면, 前夫人 平陽公 王暉은 충렬왕 26년(1300) 9월에 죽고, 8년이 지난 뒤인 충선왕 복위년(1308) 10월에 충선왕과 혼인하여 순비로 책봉된다. 그리고 《고려사》와 《묘지명》에 충숙왕후 4년(1335) 65세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30세에 과부가 되어서 38세에 충선왕과 재혼하여 순비로 책봉된 것이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미 3남4녀라는 적지 않은 자녀까지 둔 여성이 어떻게 왕과 혼인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여성의 재가가 자유로웠다는 것으로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자료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된다. 《氏族源流》陽川許氏<sup>65)</sup>를 보면 순비의 父 許珙의 女夫로 평양공만 기록하고 있고, 後夫로서 충선왕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64) 方喜根은 고려 仁·毅宗代 定安任氏의 정치적 동향에 대해 논하면서, 공예태후의 납비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定安任氏는 睿宗代 尹瓘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나 仁宗代 李資謙이라는 외척세력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을 때, 모두 이들과 대립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와 같이 定安任氏는 왕권의 확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왕권에 상응하는 세력의 등장을 제어하고, 왕권과 정치지배세력간의 세력 균형을 꾀하고자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恭睿太后 任氏의 納妃를 가능하게 했던 현실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方喜根, 〈高麗 仁·毅宗代 定安任氏의 政治的 動向에 대한 연구-恭睿太后 任氏 納妃를 중심으로-〉, 《역사학 논총》, 동선사학회, 2003, 121쪽~122쪽)

65) 《氏族源流》陽川許氏, 보경문화사, 2002.

《墓誌銘》과 《文化柳氏嘉靖譜(이하 嘉靖譜)》에는 충선왕비 순비 허씨로 기록하고 있지만, 前夫 평양공은 누락되어 있다. 《고려사》를 제외하고, 《씨족원류》와 《묘지명》·《가정보》에 前夫와 後夫를 동시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간에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의 누락은 뒤에 나올 壽妃 權氏도 마찬가지이다.<sup>66)</sup> 또 하나, 《고려사》에는 충선왕이 定安大君 許琮의 집에 종종 행차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정안대군은 순비와 同氣인 許嵩의 아들인데, 충렬왕이 궁중에서 기르고<sup>67)</sup>, 충선왕의 딸인 壽春翁主와 결혼하였다. 《고려사》열전을 통해서도 충선왕과 정안대군 사이는 매우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순비 역시 정안대군의 집에 있으면서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 충선왕과 정안대군과의 관계가 당시 과부로 혼자였던 순비를 맞아들임으로써 더욱 돈독해졌을 것은 분명할 것이다.<sup>68)</sup> 그래서 순비의 재가 역시 정략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⑥의 淑昌院妃 金氏는 進士 崔文에게 시집갔다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다. 충선왕은 어머니 齊國大長公主의 薨去를 빙자해 無比 및 환관 陶成器·崔世延 등을 제거한 뒤, 부왕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를 맞게 했다. 元 世祖의 딸로, 세자이던 자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어머니의 죽음은 자신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禪位로 왕위에 오른 뒤 8개월 여 만에 元으로 소환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66) 《고려사》에는 壽妃 權氏의 前夫 全氏와 後夫 忠肅王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氏族源流》·《安東權氏成化譜(이하 成化譜)》·《嘉靖譜》에는 모두 壽妃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前夫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67) 묘지명에는 제국대장공주가 어려서 안아 길렀다고 나온다. (《高麗墓誌銘集成》許琮 墓誌銘)

68) 정안대군은 후손이 없었다. 《씨족원류》 양천허씨 기록에 의하면 정안대군 허종은 無後이다. 만약 정안대군에게 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손이 없었던 것도 순비의 재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비는 당시 충렬왕의 사랑을 받던 궁녀로, 도성기·최세연 등과 함께 충애를 빙자한 횡포가 심하였다. 그래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무비 등을 제거했지만, 아버지의 충애를 받았던 여인을 제거했던 만큼 다시 충렬왕의 마음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방편으로, 미모가 뛰어났던 金氏를 왕에게 들인 것이다. 숙창원비의 재가 사례를 보면 고려시대 여성의 위상이 높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재가를 한다 하여도 어떤 헨디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혼 못지않게 떳떳한 결혼을 하였음을 재혼한 남편의 신분에서도 알 수 있다<sup>69)</sup>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숙창원비의 경우 세자였던 충선왕에 의해 충렬왕에게 바쳐지는 입장이었다. 숙창원비 집안에서도 환영한 것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유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가녀가 왕비가 될 때는, 정치적·정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재가 당사자인 여성의 의지는 배제된다. 또 하나의 기준을 들자면 여성들의 미모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문덕왕후와 공예태후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숙창원비는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한다. 충렬왕이 죽자 충선왕이 그녀를 간음하고 다시 자신의 妃(淑妃)로 삼았는데, 그녀는 '밤낮으로 왕에게 백가지 자태로 아양을 부려 왕이 그에 미혹되어 정사도 보살피려 하지 않았다'<sup>70)</sup>고 할 만큼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순비도 자식을 일곱이나 낳은 여자가 재혼할 때는 그녀의 미모가 예사롭지 않았으리라 짐작케 한다. 그녀는 '영특하고 깨끗하여 아름다운 바탕이 마치 선녀 같았다'<sup>71)</sup>고 묘사되고 있다. 다-⑩의 수비 권씨 역시 충숙왕 사후 아들 충혜왕

69) 崔在錫, 앞의 책, 233쪽.

70) "妃 日夜百態妖媚 王惑之 不親聽政" (《高麗史》列傳2 后妃 淑昌院妃 金氏)

71) "妃 英精毓務麗質方娥橫" (《高麗墓誌銘集成》 順妃 許氏 墓誌銘)

이 간음했다는 기사를 볼 때 상당한 미모의 여성이었으리라 추측된다. 다시 말해, 재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및 권력의 상호작용과 함께, 여성의 미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가녀가 왕비가 된 사례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치적 혼란이 심하던 고려 말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비들은 왕의 사후 수절하였는데, 아마도 고려시대 정착되기 시작한 정절관념과 함께 왕비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재가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치적·정략적 성격의 재가는 일반 지배계급의 재가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⑦ 내시 楊安吉은 曹頤의 양자인데, 당시 원나라 황제의 곁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 그의 누이가 남에게 시집 간 지 이미 오래지만, 왕은 양안길의 힘을 빌 일이 있어서 그 여자의 남편을 내쫓고 朴仁平에게로 시집보내 주었다.<sup>72)</sup>

다-⑧ 金弘己는 上將軍 趙廉卿의 딸에게 장가갔다. 조염경이 김홍기가 죄 없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겨 온 집안이 이를 위하여 蔬食을 하였다. 하루는 崔怡가 兩府 및 諸將軍을 향연하는데 조염경에게 “무엇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가”라고 묻자 “온 집안이 소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崔怡가 變色하며 “내가 그것을 안다. 公이 만약 異心이 없다면 마땅히 속히 媾를 맞으라.”고 하니 조염경이 두려워하여 郎將 尹周輔에게 시집보내고자 하였다. 딸이 울며 말하기를, “남편이 죽은지가 며칠인데 갑자기 뜻을 빼앗고자 합니까.”하여도 조염경이 강제로 시집보냈다.<sup>73)</sup>

72) "火者楊安吉 頤養子也 時在帝側用事 其妹 適人已久 王 欲求援安吉 黜其夫 以嫁仁平" (《高麗史》列傳44 叛逆 曹頤)

73) "弘己娶上將軍趙廉卿女 廉卿憫弘己無罪而死 舉家爲之茹蔬 一日 怡宴兩府及諸將軍 問廉卿曰 何故不食肉 曰闔家素饑故也 怡 色曰 我知之 公若無異心 宜速納壻 廉卿懼 欲妻以郎將尹周輔 女泣曰 夫死幾日 而遽欲奪志 廉卿強之" (《高麗史》列傳 16 諸臣 金希暉)

다-⑦에서 충숙왕은 당시 원 황제의 곁에서 권세를 누리던 양안길의 힘을 빌고자, 이미 시집간 그의 누이를 자신이 총애하던 박인평에게 재가시키고 있다. 일찍부터 양안길 측에서는 이혼을 원했지만, 못하고 있던 것을 왕의 힘으로 이혼하고 재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정치적 이유로 이혼하고, 재가하는 사례이다. 다-⑧의 金弘己는 金希禪의 아들인데, 讒訴로 崔怡에게 죽임을 당했다. 趙廉卿은 사위 김홍기의 죽음을 불쌍히 여겼지만, 결국 자신과 집안의 안위를 위해 억지로 딸을 재가시키고 있다.

이밖에 집안간의 친분으로 재가하기도 한다.

다-⑨ 金永夫는 딸이 셋이 있는데, 큰딸은 尙食直長 崔孝口에게 시집갔으나 直長이 죽자 다시 試尙書刑部侍郎 知閣門事 李世延에게 시집갔다.<sup>74)</sup>

金永夫는 靈光人으로, 인종·의종대에 활동하면서 관직이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에 이르고 있다. 金輔當이 그의 장남이다. 이세연은 仁州人으로, 平章事 李之茂의 아들이다. 김영부와 이지무는 같은 시기에 관직생활을 하였다. 더구나 김영부는 1164년에, 이지무는 1165년에, 모두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을 역임하고 있어서, 평소 상당한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서로의 자녀를 혼인시킨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참고로 이세연은 이후 김보당의 난에 연좌되어 죽는다.

다-⑩ 壽妃 權氏는 福州人이니 左常侍 權衡의 딸이다. 처음 密直商議 全信의

74) "金永夫…女三人 長適 尙食直長 崔孝口 直長卒 更嫁 於試尙書刑部侍郎 知閣門事 李世延"  
(《高麗墓誌銘集成》 金永夫 墓誌銘)

아들에게 시집갔는데 권형이 全氏 가문이 不肖하므로 이혼시키고자 하였으나 생각대로 못하였다가 忠肅王 후4년에 內旨에 의하여 絶婚하고 드디어 왕에게 納妃하니 壽妃로 책봉하였다.<sup>75)</sup>

다-⑩의 壽妃 權氏도 재가녀가 왕비가 된 사례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수비 권씨의 아버지 權衡[改名 廉]은 권력을 위해 딸을 이혼시키고, 왕에게 納妃하고 있다. 권형은 安東人으로, 吉昌府院君 權準의 아들이다. 《고려사》열전에 충숙왕이 권준의 집을 보고 그 호화로움에 감탄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리고 그 가숙들이 죄를 지고도 그 세력이 무서워 巡軍이 감히 처벌하지 못할 정도의 세도가였으며, 또한 그 세도를 믿고 土田을 탈취하고 뇌물을 받아 큰 부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다. 아들인 권형 역시 세도가의 일원으로 슬하에 5남6녀<sup>76)</sup>를 두고 있다. 그중 장녀가 수비 권씨다. 全信은 天安人으로, 충렬왕27년(辛丑, 1301)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累遷하여 寶文閣提學 등을 역임하다가, 福州(安東)牧使로 있던 충숙왕 11년(1324)에 면직된다. 충혜왕 즉위년(1330)에 다시 기용되지만, 同知密直司事 商議會議都監事를 최종관직으로 충숙왕 복위년(1332)에 또 파직 당한다. 더 이상 관직은 안 보이고, 8년이 지난 충숙왕 복위8년(己卯, 1339) 64세에 卒하였다.<sup>77)</sup> 전신의 아들과 수비 권씨가 절혼한 것은 충숙왕 후4년(乙亥, 1335)으로, 전신이 파직당하고 3년여가 흐른 뒤다. 또 그의 묘지명에 '公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 힘을 다하고 엄중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청탁이 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집안이 가난하였지만 또 살림에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

75) "壽妃權氏 福州人 左常侍衡之女 初嫁密直商議全信子 衡 以全家不肖 欲離之而未果 忠肅後四年 托內旨絶婚 遂納于王 冊爲壽妃" (《高麗史》列傳2 后妃2 忠肅王)

76) 《安東權氏成化譜》地字帳.

77) 《高麗墓誌銘集成》全信 墓誌銘.

고 한 것을 보아, 집안 살림이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더하여 前夫로 추정되는 장남인 全成安<sup>78)</sup>의 관직이 司儀署丞(정9품)인 것 역시 '가문이 불초'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 권형의 입장에선 처음 혼인을 할 땐 모르겠지만, 이때에 와서는 사돈집이 눈에 찰리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전신이 충숙왕 때 두 번이나 파직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떤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충숙왕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內旨(충숙왕)로 전신의 아들과 권형의 딸이 이혼하고, 권씨를 왕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는 主婚者인 부모에 의해 이혼하고 재가하는 사례로, 뚜렷하게 권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적·정략적 이해관계로 혼인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근대사회 여성일수록, 그것도 지배계급의 여성의 경우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결혼보다는 목적이 있는 정략혼이 대부분인 만큼 여성의 지위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 2. 권력에 의한 재가

가문이 훌륭하고 권력·재력까지 갖춘 여성이라면 재가하는데 그리 어려웠던 것 같지 않다.

다음에 나오는 鄭仲夫의 딸은 과부로 친정에서 지내다가 집안의 배경에 힘입어 재가하였다. 반대로 말하면, 여성의 가문에 의탁해 보호를 받거나 출세하려는 의도가 담긴 혼사라 할 수 있다.

78) 壽妃 權氏의 前夫인 全信의 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다. 《氏族源流》·《墓誌銘》를 보면, 전신에게는 3남3녀가 있다. 1남 成安으로 司儀署丞, 2남 希璨은 출가하였고, 3남 証(佛奴)은 아직 벼슬 전이다. 이로써, 1남인 成安과 혼인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한다.

라-① 王珪가 平章事 李之茂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이지무의 아들 世延이 金甫當의 매부로서 정중부의 난에 죽었으므로, 李義方이 왕규마저 살해하고자하여 그의 처가와의 관계를 빙자하여 수색하였다. 그러나 왕규는 정중부의 집에 숨어서 무사했다. 그때 정중부의 딸이 과부로 있었는데, 왕규를 보고 마음이 끌려서 정을 통하게 되었으므로, 왕규는 마침내 본처를 버리게 되었다.<sup>79)</sup>

라-①은 정중부의 딸이 남편과 사별 후 친정에 돌아와 있다가 무신난을 피해 정중부의 집에 숨어 든 王珪와 재혼한 사례로, 왕규의 본처를 棄妻시키면서까지 재가하고 있다. 즉, 정씨는 당시 무신정권기의 권력자인 친정아버지의 배경을 이용하여 재가하고 있다. 그리고 왕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본처를 버리고 정씨와 혼인함으로써 권력을 구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라-② 鄭誠은 仁宗 때 內侍西頭供奉官이 되었고 毅宗의 유모를 처로 삼았는데, 의종이 왕이 되자 제1구(一區)에 훌륭한 집을 주었으며 內殿崇班 벼슬도 주었다.<sup>80)</sup>

라-②의 鄭誠은 의종 때 총애를 받던 宦官이었다. 그는 인종 때 태자 覲[毅宗]의 유모<sup>81)</sup>를 처로 삼았고, 의종이 즉위하자 저택과 함께 정7품 內殿崇班에 제수되었다. 이후 권세와 총애가 날로 성하여 權知閣門祗候가 되었다가, 환관으로 朝官이 될 수 없다는 申淑 등의 상소로 관직을

79) "珪娶平章事李之茂女 之茂子世延 以金甫當妹壻 死於其亂 李義方欲并害珪 囚其妻索之 匿仲夫家 獲免 時仲夫女孀 居見珪 悅而通焉 珪遂奔舊室" (《高麗史》列傳14 諸臣 王珪)

80) "鄭誠 仁宗時 爲內侍西頭供奉官 以毅宗乳媪爲妻 毅宗 卽位 賜甲第一區 授內殿崇班" (《高麗史》列傳 35 宦者 鄭誠)

81) 乳母를 단순히 돌봐주는 여성이 아니라 젖을 먹여 키워주는 여성, 즉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이해하여, 이 경우 재혼으로 파악하였다.

삭탈 당하였으나, 왕의 총애로 곧 복직되었다. 의종의 정함에 대한 총애는 그가 유모와 결혼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모란 어머니 대신 젖을 먹여 키워주는 여자로, 의종에게는 너무나 가까운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내시의 지위에 있던 정함이 태자의 유모와 혼인을 한 것은 일반적인 혼인이라 생각하기 어렵게 한다. 이후 의종의 두터운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봐도 권력을 목적으로 한 혼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된다.

한편 집안의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再嫁 및 三嫁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

라-③ 康允忠이 재신 趙石堅을 방문하고 함께 이야기하는데, 석견의 처 張氏가 엿보고 그를 미남이라 여겼다. 석견이 죽은 후에 婢를 시켜 윤충을 청하니 윤충이 응하지 않았다가 婢가 세 번이나 돌아갔다가 오거늘 이에 가서 통하였다. 후에 또 더러운 소문이 있었으므로 윤충이 장씨를 버렸다.<sup>82)</sup> 한편 榮儉은 처음 安珪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고, 또 金子章[一作昌]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5녀를 낳았다. 마침 金氏가 죽자, 장씨가 억지로 영검을 맞아 사통하고, 결국 지아버로 삼았다. 영검이 柳濯 등과 함께 고우를 정벌할 새 장씨는 또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하므로, 영검이 돌아와서 관계를 끊었는데, 장씨는 이것을 원망하였다. (중략-사후) 장이 또 대호군 李仇祝을 간통해 여사대의 국문을 받았다.<sup>83)</sup>

82) 康允忠은 谷山人으로, 忠惠王 때의 嬖臣이며, 근본이 賤隸였다. 忠惠王과 德寧公主(忠穆王母)의 총애를 받으며, 영화를 누리고 횡포가 심하였고, 政房의 인사권을 장악하였으며, 많은 뇌물을 받았다. 恭愍王代에 贊成事와 判三司事까지 승진하였다. 이후 任仲甫의 반란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한다. 열전에 "현재 처가 있는데도 아직 상복도 벗지 않은 故人 密直 趙石堅의 妻에게 장가들어 조석견의 유산을 횡취하였다. [現有三妻 又娶故密直趙石堅服喪妻 據有石堅家產]"라는 기사가 보인다. 곧, 장씨를 취하여 재산을 차지한 뒤 버린 것으로 보인다.

83) "初康允忠訪宰臣趙碩堅與語 碩堅妻張氏窺而美之 及碩堅卒使婢請允忠 允忠不應 婢三反乃往通焉 後復有醜聲允忠奔之 榮儉初娶安珪之女生二子 又娶金子章之女生二子五女 會金氏亡 張固邀榮儉私之因以爲夫 榮儉與柳濯等征高郵 張又多穢行 榮儉還而絕之張怨之 (中略-死後) 張

라-④ 判書 金世德의 妻 尹氏가 수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깨끗지 못한 행실이 있었으므로, 그의 어머니가 그를 前 洪州牧使 徐義에게 개가시켰더니, 겨우 수일 지난 후에 윤씨가 서의를 미워하여 쫓아냈다. 현사에서 그를 추궁하는 한편 나졸을 보내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李仁任 등은 윤씨에게서 후한 뇌물을 받고 그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꾀한 끝에 ‘李豆蘭은 누차에 걸쳐 변경 지키는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윤씨를 그에게 시집보냈다.<sup>84)</sup>

라-⑤ 雲海의 처 權氏는 성품이 질투가 심하고 사나웠다. 광주에 있을 때에 투기하여 운해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 옷을 찢었으며 良弓을 꺾어버리고 칼을 빼어 말을 찌르고 개를 쳐서 죽였다. 또 운해를 쫓아 치고자 하였으나 운해가 달아나 면하고 곧 권씨를 내쳤다. 그러나 미처 혼인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권씨가 永興君 環에게 시집갔으므로 문하부가 현사에 通牒하여 이를 국문하였다.<sup>85)</sup>

라-③의 장씨는 재가뿐 아니라 삼가 이상의 혼인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장씨는 평소 문란한 행실로 강윤충과 구영검에게 棄妻당하였다. 즉 여성이 再嫁 및 三嫁를 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가 높았다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前夫 조석견은 宰臣으로 고위관료였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장씨 역시 평범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 같다. 고려시대 여성이 혼인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하였다.<sup>86)</sup> 그런 혼

又通大護軍李仇祝 爲御史臺所鞠”(《高麗史》列傳27 具榮儉)

84) “判書金世德妻尹氏 寡居數年有穢行 其母以嫁前洪州牧使徐義 纔數日 尹氏惡義而出之 憲司劾之 遣卒守其家 李仁任等受尹氏厚賂 謀欲寢之謂 豆蘭屢立邊功 以尹氏妻之” (《高麗史》列傳29 諸臣 李豆蘭)

85) “雲海妻權氏性妬悍 在廣州妬 傷雲海面 裂其衣 折良弓 拔劍刺馬 擊犬斃 又追雲海 欲擊之 雲海走免 卽去之 然猶未絕 嫁永興君環 門下府牒憲司鞠之”(《高麗史》列傳27 崔雲海)

86) 고려의 혼인 풍속을 일반적으로 婿留婦家婚이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자 집의 경제력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혼인을 할 때 혼수는 물론이고, 사위를 데리고 살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돈이 없어 혼인을 못하고 여승이 된 사례가 있다. (權純馨, 〈고려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인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집안이 대단했거나 여성에게 재산이 많았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강윤충이 현재 본처가 있는데도 아직 상복을 벗지 못한 故 밀직 조석견의 처에게 장가 들어 석견의 유산을 횡취하였다'(87)는 기사나, 장씨의 외삼촌인 判事 金成이 거짓으로 왕명을 꾸며 구영검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장씨는 문란한 행실로 어사대에서 국문을 받게 된다.

라-④ 尹氏<sup>88)</sup>의 가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위 사료를 통해 몇 가지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먼저 前夫人 김세덕은 관직이 정3품 判書에 이른다. 고위 관직자의 아내로서 윤씨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 행실이 자못 문란하여, 윤씨 어머니는 徐義에게 딸을 재가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행실이 문제가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주도로 牧使를 지낸 서의에게 재가하였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고려시대 혼인을 하려면 그 비용이 상당하였다. 그런 혼인을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친정어머니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당한 세도가였을 것이다. 더구나 재가한 남편인 서의를 미워하여 쫓아낸 것과 이것이 문제가 되자 당시 권신이던 이인임에게 뇌물을 주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또 신흥 무장세력인 이두란에게 三嫁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이두란은

---

1999.)

87) "現有三妻 又娶故密直趙石堅服喪妻 據有石堅家產" (《高麗史》列傳37 諸臣 康允忠)

88) 尹氏에 대하여 위 사료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靑海李氏 宗親會에서 발간된 《靑海伯 李之蘭》에 의하면, 李豆蘭[之蘭]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다. 前室은 咸安郡婦人 尹氏로 훗날 太祖에 의해 惠安宅住의 칭지를 받고 있다. 後室은 谷山人 康氏이다. 특히 강씨는 太祖의 繼妃인 神德王后 康氏의 조카로, 《氏族源流》北靑[靑海]李氏에 의하면 谷山人 康普戴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前室 咸安郡婦人 惠安宅住 尹氏가 위 기사의 윤씨로 보인다. (靑海李氏 宗親會, 《靑海伯 李之蘭》, 靑海伯史記編纂委員會, 1975 참고)

이성계를 도와 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시기로, 그와의 혼인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가문의 힘과 재력으로써 三嫁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라-⑤의 최운해는 通川人으로, 護軍 崔祿의 아들이다. 辛禡代에 忠勤 佐命功臣號를 받았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原從功臣 參判承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前室은 淸州人 贊成事 楊之壽의 딸로 슬하에 2남이 있고, 後室은 安東人 將軍 權定柱의 딸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sup>89)</sup> 위 기사에 나오는 권씨는 후실인 권정주의 딸이다. 권씨의 집안을 잠시 살펴보면, 아버지 권정주는 權鏞의 長男이자, 權廉의 長孫로, 壽妃가 그의 고모가 된다. 세도가의 여식으로서 운해에게 시집갔지만, 그 성품이 사납고 질투심이 많아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未絶'이라 하였으니, 완전히 혼인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 이혼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었으므로, 전남편과 합의 없이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사의 국문을 받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安東權氏成化譜》·《文化柳氏嘉靖譜》 모두 前夫와 後夫를 기록하고 있어서 재가가 이뤄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권력에 의한 재가는, 정치적·정략적 성격의 재가와 함께 재가 사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근대사회의 혼인이 대체로 가문과 부모의 주도로 이뤄진 정략혼이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거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는 반대로 가문이나 권력·재력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은 재가가 힘들었을 것으로, 재가의 허용만을 근거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89) 《氏族源流》通川崔氏.

### 3. 성적 욕망에 의한 재가

고려시대 재가 사례 가운데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남편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마-① 高宗元年 忠獻의 妻 任氏를 봉하여 綏成宅主로 삼고, 王씨는 靜和宅主로 삼았다. 임씨는 본래 장군 孫洪胤의 처였는데, 충헌이 홍윤을 죽이고 그 아름다움을 듣고 임씨와 사통하였다. 왕씨는 강종의 서녀이다.<sup>90)</sup>

마-② 怡가 大集成의 딸이 새로 과부가 되었는데 아름답다는 것을 듣고는 장가들어 후실로 삼았다.<sup>91)</sup>

마-③ 忠烈王이世子로 있을 때 靴工 金准提의 妻가 美色이라는 소문을 듣고 궁내에 들여 놓았다.<sup>92)</sup>

마-①의 孫洪胤은 참지정사를 지낸 孫碩의 아들로, 崔忠獻이 집권 초기에 거병을 꾀한다는 소문으로 직접 죽인 인물이다. 그리고 최충헌은 잘 알려져 있듯이 무신집권기 최고의 권력자였다. 그와 같은 위치에서 죽은 홍윤의 처 임씨를 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의 뒤를 이은 崔怡 역시 마찬가지로, 처녀이든 과부이든 마음에 드는 여성을 취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택 기준은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③의

90) "高宗元年 封忠獻妻任氏爲綏成宅主 王氏爲靜和宅主 任氏本將軍孫洪胤妻也. 忠獻殺洪胤 聞其美私之 王氏康宗庶女也" (《高麗史》列傳42 叛逆3 崔忠獻)

91) "怡聞大集成女新寡而艷娶以爲後室" (《高麗史》列傳42 叛逆3 崔怡); 이때 후실로 삼은 대집성의 딸이 崔沆의 계모 大氏가 아닐까 한다. 대씨는 前夫와의 사이에 子 吳承績이 있다.

92) "忠烈 爲世子 聞鞋工金准提之妻美 納之" (《高麗史》列傳 36 嬖幸 李英柱)

가죽신 짓는 工人 김준제의 처는 미친한 출신이지만, 세자였던 충렬왕이 그 아름다움을 듣고 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 사례 역시 세자의 지위를 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성을 취한 것으로,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욕망에 의해 이루어진 재가임을 알 수 있다.

마-④ 于琯은 고려로 돌아와서 林惟인(木+因)의 妻 蔡氏를 취하였는데, 원나라 중서성에서는, 자기 나라 조정에서 전일에 林衍·林惟인(木+因)의 家屬들을 원나라 서울로 보내라고 알렸는데, 채씨가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범망을 빠져 나와 혼자 머물다가 우정이 채씨를 취하였으니 죄가 이보다 큰 것은 없다하고, 달로화적에 移文하여 우정과 채씨를 죽이게 하였다. 채씨의 아버지 추밀사 蔡仁揆도 연좌되어 靈興島로 귀양갔다.<sup>93)</sup>

마-④의 우정은 元宗代에 譯語로 누친하여 郎將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그가 범망을 피해 혼자 머물고 있던 채씨를 처로 삼을 수 있던 것도, 역관으로서 어느 정도 권세를 누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비록 원에 소환되어야 할 채씨를 처로 들인 것이 죄로 인정되어 죽음을 당하지만, 당시 원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역관으로서 그가 가진 권세는 상당했을 거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때로는 간음하거나 사통한 뒤 그 여성을 다른 사람의 처로 주기도 한다.

마-⑤ 奇世傑의 妻 房氏는 評理 房彦暉의 딸이다. 기씨 가문이 멸망하자 金鏞이 방언휘를 협박 유인해서 방씨를 간음했으나, 방씨는 유부녀인 까

93) "琯東還 娶林惟인(木+因)妻蔡氏 中書省以爲 朝廷嘗督取林衍惟인(木+因)家屬赴京 蔡氏不遵 朝命 漏網獨留 而琯娶之罪莫大焉 遂移文達魯花赤 誅琯蔡氏 父樞密使仁揆 亦坐流靈興島" (《高麗史》列傳43 叛逆4 于琯)

답에 김용도 감히 제 처로 삼지 못하고, 그의 문객인 正言 崔守雌의 처로 삼아주었다.<sup>94)</sup>

마-⑥ 丁亥 초하루에 王(忠惠王)이 南氏로 盧英瑞의 妻를 삼아주었다. 남씨는 일찍 士人에게 시집갔다가 大行王이 빼앗아 私愛하였고, 이에 이르러 왕이 또한 私通하다가 얼마 후에 英瑞에게 주고 또 자주 그 집에 행차하였다.<sup>95)</sup>

마-⑦ 처음에 奇顯의 後妻가 과부로 살았는데, 辛旽이 중이 되어 사통하고, 후에 기현에게 시집보냈다. 신돈이 귀하게 됨에 이르러, 기현의 집에 머무르며 또 간통하고는 기현의 처로서 식사를 맡게 하였다.<sup>96)</sup>

II에서 살펴보았듯이, 본래 남편이 있는 여성은 재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마-⑤에서 방씨는 당시 權臣이던 김용에 의해 최수자에게 재가하였다. 그런데 後夫人 최수자와 김용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後夫人 최수자는 김용의 문객으로, 그의 입장에서는 김용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김용으로서도 자신이 간음한 방씨를 자신의 측근인 최수자의 처로 보내는 것이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쌍방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루어진 혼사였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계속 보인다. 마-⑥에서 충숙왕·충혜왕은 남편이 있는 여성을 힘으로 빼앗아 [奪] 사통한 뒤에 다른 남자의 처로 주고 있다. 역시 왕이라는 최고 권력자에 의해 이루어진 재가지만, 충혜왕대 폐신이던 노영서의 입장에서 권력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⑦의 奇顯은 辛旽의 심복으로 공민왕대 亂臣이었다. 신돈이 기현을 언제 만났는지 정확

94) "世傑妻房氏 評理彦暉女也 奇氏既滅 金鏞 脅誘彦暉 私房氏 以其有夫 不敢自恣 乃與其門客正言崔守雌 爲妻" (《高麗史》列傳44 叛逆 奇轍)

95) "丁亥朔 王 以南氏 妻盧英瑞 南氏 曾適士人 大行王 奪而幸之 至是 王亦私之 旣而 以與英瑞 又數幸其家" (《高麗史》世家 36 忠惠王 己卯 後卽位年 八月)

96) "初 顯後妻寡居 旽 爲僧通焉 後歸顯 及旽貴 主顯家 又通焉 以顯妻 主中饋" (《高麗史》列傳 45 叛逆 辛旽)

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공민왕에게 신돈이 소개된 이후일 것으로 추측한다.<sup>97)</sup> 신돈은 과부로 있던 여성과 사통한 뒤에 그녀를 기현에게 시집 보낸다. 권력을 잡은 뒤에는 기현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그 처로 하여금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며, 벼슬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현의 처에게 뇌물을 주는 기록도 보인다. 이 사례만으로도 정상적인 재가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기현이 신돈의 심복과 같은 존재라는 것과, 그 처가 재가 후에도 신돈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이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가 맞아 이루어진 혼인이 아닐까한다. 즉 신돈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기현 역시 신돈과의 관계를 위해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재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과 사통한 뒤 그 측근에게 처로 주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맺는 비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때 여성들은 권력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앞의 사례들이 주로 남성들의 주도로 재가가 이루어졌다면, 아래 마-⑧의 金文庇의 妻 朴氏는 남편과 사별 후에 이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金暉에게 적극적으로 구혼하고 있다.

마-⑧ (金慶孫의 아들) 金暉은 동료인 상장군 金文庇와 친해서 일찍이 그의 집으로 가서 바둑을 놓고 있었는데, 김문비의 처 박씨가 창문 틈으로 엿보고 김훈의 아름다운 얼굴에 감탄하였으며, 또 김훈도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마음을 두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김문비가 죽고 김훈의 처도 죽었으므로, 박씨가 사람을 보내 김훈에게 요청하기를 “첩이 지금 아들이 없으니 당신의 아들 한 분을 얻어 양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말씀할 일이 있으니 꼭 한 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97) 辛旽은 玉川寺 寺婢의 아들로 본디 천한 신분이었다. 그런 신돈이 자신이 사통한 과부를 기현에게 시집보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둘의 관계가 평범한 중의 신분으론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김흔이 그를 찾아가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 監察과 重房에서 연이어 글을 올려 그의 죄를 극렬히 논박하였다. 왕은 김흔이 先后의 族親이어서 용서하려 하였으나 부득이 김흔을 섬으로 귀양 보내고 박씨는 竹山으로 돌려보냈다.<sup>98)</sup>

마-⑧의 박씨는 남편과 사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김흔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혼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배우자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간통한 것이어서, 감찰과 중방의 탄핵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김흔은 섬으로 귀양 가고, 박씨도 本鄕으로 내려 보내진다. 비록 성사되지는 않은 듯하나, 자신의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모색한 사례이다.

위 사례들이 성적 욕망에 의해 이뤄진 재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므로 여성의 지위와 연관시키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다.

#### 4. 의탁형 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려시대 역시 살아가기 막막하여 재가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경제적 여건도 문제지만,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재가 사례 가운데

98) "璉 … 與上將軍金文庇善 嘗至其家圍碁 文庇妻朴氏 從窓隙窺視 嘆其美偉 璉聞之遂屬意 未幾文庇死 璉妻又死 朴遣人請曰 妾無兒 願得君一子養之 且曰 事有面陳幸一來 璉遂往通焉 監察重房交章極論 王以先后族 欲原之 不得已流海島 歸朴于竹山." (《高麗史》列傳16 諸臣 金慶孫/金璉); 김흔의 아버지 金慶孫은 경주사람으로, 崔怡의 사위 金若先의 아우이다. 忠烈王의 모친인 順敬太后 金氏는 김약선의 딸인 바, 김흔은 순경태후의 從弟이다. 김흔은 이 사건으로 유배되지만, 이후 관직이 判三司事(중1품)에 이르렀다. 金文庇는 가문은 한미하나, 勇力으로 발탁되어 무신정권 말기에 野別抄 指諭가 되었고, 충렬왕 때에는 누천하여 軍簿判書(정3품)에 이르렀다.

데 가장 눈여겨 봐야할 사례가 이 부분일 듯하다. 《墓誌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바-① 공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고 학문에 뜻을 둬 미처 義父가 집안이 가난한 것으로 학문을 시키려 하지 않고 장차 그 아들과 함께 家業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 어머니가 不可하다고 막으며 말하기를 “첩이 衣食 때문에 정절에 부끄러움을 당했으나 그 유복자가 다행히 지금 15세의 소년이 되어 학문에 뜻을 두니 반드시 그 애 아버지가 속해 있던 본래 무리에 투신하여 유업을 계승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전 남편을 다시 보겠습니까?” 하니 드디어 그러한 뜻으로 용단을 내렸다. 이에 공을 率性齋에 입학시키니 전 남편의 舊業을 따르게 한 것이다.<sup>99)</sup>

바-② 安輔의 부인 崔氏는 자녀가 없으므로 따를 곳이 없고, 따를 곳이 없으므로 수절하기도 어려웠다.<sup>100)</sup>

도미부인 설화에도 잠시 나왔지만, 여성이 홀로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면 재가하기도 하였다. 위 묘지명에서도 남편이 죽은 뒤 수절·절개를 지키지 않고 재가한 이유로써 의탁할 곳이 없었던 것과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바-①에는 스스로 재가한 것에 대해 “정절에 부끄러움을 당했다[見愧栢舟]”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가를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사회적 인식상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②의 安輔는 順興人으로, 공민왕대에 密直提學 兼 監察大夫 提

99) “公幼孤 及志學 義父以家貧 不欲它方學 將與其子同業. 其母執不可 曰 “妾以衣食 故見愧栢舟 然其遺腹 幸今成童 志于學 必宜投屬爾父本徒 俾踵後塵 若不爾 則吾何面 復見先夫於地下” 遂勇斷其志 乃以公款 學率性齋 蓋從先夫舊業也” (《高麗墓誌銘集成》 李勝章 墓誌銘); 率性齋는 崔冲이 세운 文憲公徒 내의 9齋의 하나이다. 9齋는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大和, 待聘이다.

100) “安輔…夫人崔氏 無子 故無所從 無所從故 難於守節” (《高麗墓誌銘集成》 安輔 墓誌銘)

調典選事를 거치고, 동왕4년(1355)에 政堂文學에 임명되었다. 이후 왕이 정사에 어두워지자, 어머니 봉양을 이유로 사직하고 외직을 청하니 東京留守가 되었다. 그리고 동왕6년 9월(1357) 56세에 세상을 뜬다. 안보의 官歷을 보면, 집안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공은 생산을 일삼지 않았으며, 죽음에 이르러 집에는 조금의 저축도 없었다[不事生産 及歿家無擔石之儲]"<sup>101)</sup>라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록은 열전과 묘지명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임을 생각할 때, 재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無子"로 의탁할 곳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이 56세에 세상을 떴으니 최씨 역시 적은 나이는 아니었겠지만, 자식까지 없어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재가를 선택한 것이다.

《고려사》는 사료의 특성상 주로 정치적·정략적 성격, 혹은 권력형 재가를 주로 기록하였지만, 《묘지명》은 이승장의 어머니와 안보의 처와 같이 의탁할 곳이 없어서 재가하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일반적인 재가 사유에는 후자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고, 남아있는 기록들의 특성도 대부분 지배계급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앞서의 유형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려사》와 《묘지명》에 기록된 재가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그 유형은 다르더라도 재가를 통해 새로운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가문에 의해 정략적으로, 혹은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서, 혹은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재가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재가를 기존 견해와 같이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의 <표3>은 《成化譜》와 《嘉靖譜》에 기록된 고려시대 여성의

101) 《高麗史》列傳22 諸臣 安輔.

재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3> 《安東權氏成化譜》·《文化柳氏嘉靖譜》의 재가 사례<sup>102)</sup>

번호	시기	父		前夫			後夫			비고
		이름	본관	이름	관직	자녀	이름	관직	자녀	
1	父 恭愍王 前後	柳之浞	晋州	辛慶芳	判事	2남1녀	吳陵和	判事	1남	父 恭愍王3年7月 以三司右使柳之浞 爲楊廣道都巡問使
2	前夫, 恭愍 10年 卒	安國瑞	竹山	崔仁富	大護軍	1남	鄭修道	知西州事, 判書	2남	
3	祖父, 忠肅 王 前後	金翰	彥陽	李暻	監務	1남1녀	徐允貴	.	1남	祖父 金之甲
4	.	李隲	延安	金乙富	少尹	1녀	朴思齊	.	1남	3. 金翰와 비슷한 시대
5	祖父, 禡王 5年 卒	權侃	安東	尹希宗	摠郎	1녀	金自忠	密直	.	祖父 權阜
6	父 恭愍王 5年 伏誅	權謙	安東	權蹠	.	1녀	金立堅	評理, 兪議	1녀	
7	後夫, 太宗 2年 卒	王誥	開城	任巨卿	兵馬使	2남2녀	高呂	高城君	1녀	王誥 子 王緝 尙 恭 王女肅寧宮主
8	前夫, 忠穆 3년 生	權定柱	安東	崔雲海	副使, 判 書	1남	王環	永興君	無後	崔雲海-前夫, 後室 永興君-後夫, 後室
9	前夫, 禡王 11年 文科	洪潛	南陽	李原	左議政	無後	李義文	.	無後	李原-前夫, 中室
10	後夫, 禡王 6년 文科	李瑠	.	金慶長	府使	1남	閔壽山	郎將, 郡 事	2남	金慶長-前後室 관계는 모호하나 다른 妻가 보임
11	忠肅王代	權廉	安東	全氏	.	.	忠肅王	王	.	壽妃權氏
12	後夫, 忠烈 30年生 禡 王8年 卒	權漢功	安東	李得壽	檢侍中	1남	廉悌臣	政丞	4남5녀	廉悌臣-後夫, 後室
13	父, "	廉悌臣	瑞原	李竦	判書	2남2녀	卞南龍	漢城府尹	2남	

102) 1번~13번까지는 《成化譜》·《嘉靖譜》에 기록된 재가 사례 가운데, 고려시대에 살았거나,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례들을 뽑아 표로 만든 것이다. 시기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재가녀를 기준으로 父, 前夫, 後夫, 祖父 등 활동시기를 알 수 있는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14번 閔頤의 딸은 《씨족원류》에서 발견하여 기록한 것이다.

14	父,元宗10 年生 忠肅 復4년 후	閔頤	驪興	朴仁龍	侍郎	1남3女	許信	直提學	1남1녀	子女：夫 기준
----	--------------------------	----	----	-----	----	------	----	-----	------	---------

《성화보》와 《가정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관직자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표에 기록된 前夫와 後夫의 관직도 상당히 높은 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8번 권정주와 11번 권렴의 딸은 앞서 별도로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그 기록이 상세한 인물들은 관력과 자녀들까지 기록하고 있어서, 비록 《고려사》와 《묘지명》에서처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몇몇 사료를 참고하여 추정해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대표로 사례 12번의 權漢功의 딸 권씨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sup>103)</sup>

권한공은 安東人으로 僉議評理를 지낸 權頤의 아들이다. 충렬왕 때 급제를 하였고, 元에 머물면서 충선왕을 모신 공으로 권세를 잡았는데, 특히 銓注를 장악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간사한 일을 많이 행하였다. 벼슬은 都僉議政丞에 이르렀고, 醴泉府院君이 되었으며, 원나라 벼슬로 太子左贊善을 제수 받았다. 재가녀 권씨는 권한공의 장녀로, 그녀의 혼사는 집안에서 더 신중했을 것이다. 前夫 李得壽는 慶州人으로 관직은 檢侍中이고, 아버지는 鷄林君 李瑄이며, 숙부가 李齊賢이다. 이제현은 안동권씨 權溥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충선왕의 부름을 받아 원에 머무를 적에, 충선왕이 원 황제의 御香使로 浙江의 寶陀山에 행차한 적이 있었는데-충숙왕 6년, 1319년-, 이때 권한공과 같이 시종하였다. 즉, 권한공과 이제현은 인척관계 뿐 아니라, 각자 원에 머무를 때 교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권씨와 이수득의 혼인은 안동권씨와 경주이씨 가문간의 정략혼이라 할 수 있다. 後夫인 廉悌臣은 瑞原人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원

103) 《성화보》 외에 《고려사》와 《씨족원류》를 참고 하였다.

나라에 가서 平章事로 있는 고모부 末吉의 집에서 자랐다. 《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원나라와 고려를 오가며 두루 벼슬을 하였고, 충숙왕 이후 우왕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의지하는 바가 컸던 것 같다. 고려에서는 門下侍中을 거쳐 우왕 때 領三司事·領門下府事를 지냈다. 공민왕비 愼妃가 그의 딸이다. 염제신은 충렬왕 30년(1304)에 출생하였고, 원에서 성장하여 관직까지 지냈으며, 이후 두루 신임을 얻어 고려와 원을 오가며 관직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한공이 염제신과 안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관직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염제신에 대한 왕들의 총애와 그의 관력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욕심나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두 집안 모두 평범한 것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권씨와 염제신의 혼사 역시 일반적인 혼사라기보다는 집안간의 정략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sup>104)</sup> 염제신의 딸 역시 재가를 하였는데, 사례 1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례도 12번의 사례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것은 몇 사례 안 되지만, 《성화보》와 《가정보》의 사례에서도 집안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정략적인 이유로 재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가문이 좋고, 관직이 높을수록 나타나기 쉬운 재가 유형일 것이다.

이밖에 <표3>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前夫에 비해 後夫의 관직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가가 악덕시 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재가라 하여 이전보다 못한 가문과 혼인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가문과 혼인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도 고려사회가 가문과 문벌을 중시하던 사회였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하겠다. 또 하나, 이것은 여성이 초혼일 때도 해당되고 있지만, 특히 재가일 때는 중실 또는 후실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초

104) 별다른 기록은 없지만, 이득수와 사별한 뒤 염제신에게 재가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혼보다 재가할 때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정말 초혼이 아닌 '재가'이기 때문이라면, 이것이 재가의 한계가 아닐까 한다.

고려왕조는 지배계급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절을 권장·요구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정절의식이 정착되고 있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재가를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재가한 여성이 스스로를 가리켜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재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려시대 지배계급 여성들의 재가는 정치적·정략적 혹은 권력에 의한 재가거나, 성적 욕망에 의한 재가, 그리고 의탁형 재가로 분류된다. 그것도 대부분 남편 사후에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재가 당사자인 여성의 의지보단 주로 가문과 권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서, 마치 여성의 의지로 재가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재가의 허용이 곧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보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IV. 高麗時代 再嫁를 통해 본 支配階級 女性의 生活相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말하면서 재가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이뤄져왔다. 재가녀가 왕비가 된 경우, 재가시 전남편의 자식을 데려간 경우, 또 남편을 버리고 재가 삼가까지 하는 여성들의 사례를 들면서 '고려시대 혼자 된 여성의 경우 수절하기 보다는 재가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재가에 의해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좀 더 나아가 '고려 여성들이 자유롭게 재가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적인 증거'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재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의 II, III장에서 재가도 초혼과 다름없이 정식 절차와 형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가가 성사되는 원인 가운데, 정치적·정략적 혹은 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확연히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일부 여성들은 아름다운 외모가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이때 여성의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조염경의 경우처럼 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과 가문의 안위를 위해 강제로 재가시키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여성의 외모에 반하여 강제로 취한 경우도 있다. 물론 여성이 적극적으로 재가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경우는 여성의 가문과 재력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 반대인 경우, 즉 가문도 별 볼일 없고, 경제력도 변변치 않으며, 여기에 외모까지 따라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들이 재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거의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105)</sup> 이것은 고려가 가문과 문벌을 중시하던 사회였기 때문이기도 하

105) 만약 정치적 이유나 부귀 때문에 이혼당했다면(棄妻), 더욱 재가하기 어려웠을 것이

지만, 여성들이 혼인하는데 드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① 종실인 王璿은 수사도 벼슬과 주국 훈위를 받았는데, 사람됨이 물욕이 적었고 불교만 독신하고 생업을 돌보지 않았다. 그는 고종 3년에 죽었는데, 딸이 둘이 있었으나 집안이 가난해서 시집을 보내지 못하였고, 그의 장례조차 지내지 못하니, 최충현이 왕에게 보고하고 관비로써 장사를 차려 주게 하였다.<sup>106)</sup>

사-② 金之淑은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였으며 벼슬은 내직과 외직을 역임하였는데, 어디서나 공적을 남기고 명성이 있었다. 딸 둘이 있었는데 가세가 빈곤하여 시집가지 못하고 女僧이 되었다.<sup>107)</sup>

사-① 왕선의 아버지 王珙은 仁宗의 딸 永和宮主와 혼인하여 邵城伯에 책봉되었고, 明宗 12년에는 守司徒 邵城侯에 올랐다. 그의 성품이 貪鄙하였다는 것과 송사에 연루됨에 白金 6斤을 뇌물로 주고 벗어난 기록 등을 볼 때, 재산도 제법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들 왕선이 아무리 물욕이 적어 생업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딸을 시집보내지 못할 정도였을까. 더구나 어머니는 인종과 공예태후의 딸인 영화궁주였다. 실제 사정이 어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종실이라도 집안이 어려워면 딸을 시집보내기 힘들었던 것 같다. 사-②의 김지숙은 光州人으로, 參知政事를 지낸 金鍊의 아들이다. 그는 同知光政院事, 贊成事 등 재상급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1품 僉議中贊으로 치사할 정도로 화려한 관력으로 지내고 있지만, 그의 두 딸은 집이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하였다.

106) "璿 守司徒柱國 爲人寡慾佞佛 不營產業 高宗三年 卒 有二女 家貧未嫁 不克襄事 崔忠獻聞于王 官庀葬事" (《高麗史》列傳3 宗室 肅宗); 왕선은 숙종의 아들인 帶方公 王備의 후손이다. 가계를 적어보면 肅宗→帶方公 王備→王瑜→王珙→王璿이 된다.

107) "金之淑 性廉潔剛正 歷仕中外 皆有聲績 二女以家貧 未嫁爲尼" (《高麗史》列傳21 諸臣 金之淑)

모두 비구니가 되었다. 아무리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했다고 하지만, 과연 딸을 시집보내지 못할 정도였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김지숙과 그 아들 대에 별다른 정치적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이 사례 역시 왕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혼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위 두 사례를 통해 아무리 집안이 훌륭하고, 혹은 종실이라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없이는 혼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 중기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초혼이 이 정도라면, 재가의 경우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결국 여성이 재가를 하려면 최소한 권력·재력·아름다운 외모 중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앞서서도 살펴보았던 고려시대 여성의 재가 사례를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편 재가에 대해 연구하면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이것을 소개하고, 설명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재가 사례 가운데, 문덕왕후 유씨(다-③)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신난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거나(다-④ 공예태후, 바-① 이승장의 모친), 그 이후의 사례들이다. 다시 말해 고려 전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고려시대 근간이 흔들리며 서서히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무신집권기를 기점으로 고려 말까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108)</sup> 그런데 고려 후기로 가면서 재가 사례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혼사례이다.<sup>109)</sup> 이들과는 달리 Ⅱ장에서 살펴보았던 정표 사례는

108) 사료란 시대가 앞설수록 적고, 뒤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접할 수 있는 사료만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재가와 이혼 사례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109) Ⅲ장의 <표2>와 <표4>를 함께 참조.

오히려 고려 전기에 집중되어 있고, 후기로 갈수록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고려시대 재가와 이혼 사례는 무신 난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무신 난 이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와는 반대로 정표정책은 무신 난 이전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혼인이 한 사회의 구조나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듯이, 혼인의 일면인 이혼과 재가 역시 그 사회의 성격을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혼과 재가, 그리고 정표사례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은 재가를 좀 더 이해하고, 나아가 고려사회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정표사례와 재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II-〈표1〉을 보면 의종조까지의 정표횟수가 그 이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표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교적 덕목을 실행하는 자들을 표창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정표사례가 재가와는 반대로 무신집권기 이후부터 뜸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비정상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세력에게 유교적 덕목을 요구하기란 무리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것은 부원세력·권문세족 등으로 대표되는 고려 후기 지배층과도 연결될 것이다.<sup>110)</sup> 그들은 이미 정치적·경제적으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혼인망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사돈집이 불초하다 여겨 딸을 이혼시킨 뒤 왕에게 納妃를 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든다면 남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여성을 취하기도 하며, 권력과 영화를 좇아 본처를 버리고 세도가의 딸과 재혼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국가가 잘 정비되어서 사회가 안정화되고, 그로써 제도가

---

110) 권문세족과 관련해서는 朴龍雲, 《高麗時代史》下, 일지사, 1987, 527쪽 이후를 참고하기 바란다.

잘 운영되었다면, 이처럼 쉽게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혼란기에는 힘이 곧 법으로, 기존의 질서는 무시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전기에 자주 보이던 정표정책이 무신집권기 이후 드물어지고, 반대로 이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재가 사례가 무신집권 이후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만약 그렇다면 시기별 정표사례와 재가사례의 횟수가 반비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 진다.

다음으로 이혼과 재가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이혼은 곧, 棄妻'라고 할 만큼, 고려시대는 기처에 의한 이혼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여성의 지위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그리고 재가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문제를 배제하고, 재가와 여성의 지위를 논할 수 없을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정치적 필요에서 왕이나 권력가에 의해 이혼이 강요되기도 하고, 아내가 칠거지악의 허물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부귀와 출세를 위해서도 쉽게 처를 버리고 있다. 실제로 고려시대 이혼사례를 보면, 棄妻가 가히 압도적이다.

<표4> 고려시대 일반인의 이혼 사례

시기/횟수	성종/1건	의종/1건	명종/4건	고종/2건	원종 / 1건
이혼원인	7출(불효)	7출(불효)	정치 3건, 7출(간통)	7출(병), 富貴	失節
시기/횟수	충렬왕/1건	충숙왕/2건	충목왕/1건	공민왕/2건	우왕 / 4건
이혼원인	출세	출세, 정치	미상	미상, 7출(음란)	7출(질투), 명예, 棄夫, 간통 후 도주

\*\* 權純馨, <고려의 이혼과 재혼>, 《민속학연구》 6, 1999, 21쪽, <표2> 를 재구성.

Ⅲ장- <표2> 의 왕실이혼 사례를 봐도 대부분 정치적 이유로 폐출당하고 있고, 위 <표4> 의 사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이혼 사례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2건과 棄夫 1건, 간통 후 도망가 처벌된 것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棄妻에 의한 이혼이다. 시기에 따라 그 사유가

다르나 고려의 이혼은 곧 기처라 할 만큼 기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왕실과 일반인의 이혼사례 23건 가운데, 19건이 기처로 인한 이혼이고, 여기에 11건<sup>111)</sup>이 정치적 이유나 명예·부귀를 목적으로 아내를 버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이 시기가 정치적으로 변동이 심하고, 사회기강이 문란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대개 이혼과 재가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재가가 빈번하다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려 중기 무신집권기를 거치면서 기처가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다음의 사료들에서 알 수 있다. 이 사료들은 기처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어서 당시 고려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 생각한다.

사-③ 王珪가 平章事 李之茂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이지무의 아들 世延이 金甫當의 매부로서 정중부의 난에 죽었으므로, 李義方이 왕규마저 살해하고자하여 그의 처의 관계를 빙자하여 수색하였다. 그러나 왕규는 정중부의 집에 숨어서 무사했다. 그런데 그때에 정중부의 딸이 과부로 있었는데, 왕규를 보고 마음이 끌려서 정을 통하게 되었으므로, 왕규는 마침내 본처를 버리게 되었다. …… 金純富가 왕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양반 가문의 출신으로서 이제 본처를 버리고 세도재상의 딸과 결혼하여 비루하게도 목숨이 살고 있으나 명망과 절조는 이미 추락되었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士大夫들과 함께 조정에 있겠느냐”라고 하니 왕규가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였다.<sup>112)</sup>

111) 선희왕후의 경우 폐출사유가 불분명하지만, 단순히 문종의 개인감정만으로 폐출시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왕실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정치적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일단 11건에서는 제외하였다.

112) “珪娶平章事李之茂女 之茂子世延 以金甫當妹壻 死於其亂 李義方欲并害珪 囚其妻索之 匿仲夫家 獲免 時仲夫女孀 居見珪 悅而通焉 珪遂弃舊室 … 謂珪曰 公 衣冠之族 今背舊室 托婚權門 以圖苟活 名義已虧 將何顏 與士大夫 共立於朝乎 珪縮惡無以對” (《高麗史》列傳14 諸臣 王珪)

사-④ 牽龍은 관직은 직위가 낮으나 임무는 영예스러운 까닭에 권세 있고 귀한 집 자제들이 모두 그 자리를 원하였다. 權守平은 隊正으로부터 견룡에 보충되었으나 집이 빈궁한 까닭에 그 직을 사절하였더니 친구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영예로운 임명이므로 처를 버리고 다시 장가를 들어 재부를 구하는 자가 많다. 만약 자네가 부잣집 딸에게 다시 장가들려면 누가 사위 삼지 않으리오”라고 하니 權수평이 말하기를 “잘 살고 못살기는 천명이다. 어찌 차마 20년 동거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잣집 여자를 얻겠는가?”라고 하니 말하던 사람이 부끄러워하였으며 또 감복하였다.<sup>113)</sup>

마-⑤ 孫攄은 … 그의 처가가 왕실의 서족이기 때문에, 그가 臺省, 政曹, 學士, 典誥 등의 관직으로 임용될 수가 없었다. 그의 처가 손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천한 나의 친정 탓으로 儒林의 淸要職에 오르지 못하니, 차라리 나를 버리고 世族 가문에 재취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손변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의 벼슬길을 얻기 위하여 30년 함께한 조강지처를 버린다는 것은 나로서는 차마 못할 일이다. 하물며 자식까지 있지 않는가?”라고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들 世貞도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였다.<sup>114)</sup>

사-⑥ 李英柱의 父는 李應公이다. 이영주는 처음에 중이 되었다가 뒤에 환속하여 良家의 딸에게 장가들어 한 아들을 낳았으며 管城縣令이 되었다. 忠烈王이世子로 있을 때 靴工 金准提의 妻가 美色이라는 소문을 듣고 궁내에 들여 놓았는데 그 때에 벌써 임신 수개월 이었다. 그 후 딸을 낳으매 宮中에서 기르기를 친 딸처럼 하였다. 이영주가 본처를 버리고 그 딸에게 장가드니 당시 이영주를 國婿라고 칭하였다.<sup>115)</sup>

113) “牽龍 職卑而任寵 權貴子弟 皆願爲之 守平由隊正得補 辭以家貧 親舊曰 此榮選也 率多易妻求富 君若改娶富家 誰不願授室 守平曰 貧富 天也 何忍弃二十年 糟糠之妻 以求富室邪 言者慙服” (《高麗史》列傳15 諸臣 權守平)

114) “攄 … 以妻派聯國庶 不得拜臺省政曹學士典誥 妻謂攄曰 公因我系賤 不踐儒林淸要 敢請弃我 更娶世族 攄笑曰 爲己之宦路 弃三十年糟糠之妻 吾不忍爲也 況有子乎 遂不聽 子世貞亦不得赴舉” (《高麗史》列傳15 諸臣 孫攄)

115) “李英柱 父應公 英柱 初爲僧 後歸俗 娶良家女 生一子 爲管城縣令 忠烈 爲世子 聞鞋工金准提之妻美 納之 時有身 已數月 及生女 養於宮中如己出 英柱 棄其妻 娶之 時稱國婿” (《高麗

사-③은 무신 난 이후 김보당의 난에 연좌되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자, 본처를 버리고 세도가의 딸과 재혼한 사례이다. 그리고 왕규의 그런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는 김순부의 말을 빌면,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배층 관료로서 이유 없이 기처 하는 것은 그때까지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 같다. 사-④, ⑤의 권수평, 손변은 《고려사》 열전 앞뒤에 나란히 나오고 있고, 또 1년차로 세상을 뜨고 있는 것을 보면, 동시대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사례는 상당히 비슷하다. 기사를 보면, 이 당시 대부분의 남성들은 출세를 위해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손변의 아내는 자신의 집안이 미천하여 남편이 출세에 어려움이 있자, 자신을 버리기를 청하기까지 한다. 즉, 권수평과 손변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기처가 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권수평과 손변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고 있다. 왕규가 활동하던 무신집권 초기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던 기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약해져서, 여전히 처를 버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기처 하는 일이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sup>116)</sup> 사-⑥에서 충렬왕 대 폐신인 이영주는 권력을 구할 목적으로, 아들까지 낳은 본처를 버리고 충렬왕의 의붓딸과

---

史》列傳36 嬖幸 李英柱)

116) 왕규의 생존시기는 인종20년(1142)~고종15년(1228)이다. 김보당의 난이 명종3년(1173)에 일어났으니, 30대 초반의 나이에 본처를 버리고, 정중부의 딸과 재혼한 것이다. 생년은 모르지만 권수평은 고종37년(1250)에, 손벽은 고종38년(1251)에 사망하였다. 대략 왕규와 권수평·손벽과의 시대적 차이는 2~30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덧붙인다면, 남성의 초혼 연령을 평균 20살로 보고, 권수평·손벽이 혼인 후 20년과 30년이 지나고서야 기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 위 사료는 이미 중년이 훌쩍 넘은 40~50대 경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권수평과 손벽의 경우는 어찌면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출세를 하려는 마음이 적었던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짐작도 해본다.

혼인하였다. 《고려사》기록에 의하면, 그의 성품은 탐욕스럽고 포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인물됨과 실제로 충렬왕이 즉위한 뒤 권세가 날로 성한 것을 보면, 기처 한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노골적으로 기처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사》형법지에는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sup>117)</sup> 이유 없이 처를 버린 자는 관직을 정지시키고, 부처한다.'<sup>118)</sup>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고려 후기로 갈수록 기처에 의한 이혼사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 이 규정의 시행여부가 의심스럽다. 이 규정이 나온 원종13년(1272)은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전란에 시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해이다. 여기에 삼별초 항쟁으로 점령당한 지역에서 舊妻를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처였을 뿐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조항을 뒤집어 보면 '부모와 의논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건 처를 버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기처가 빈번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전근대 사회에서 혼인제도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고려의 혼인제도 역시 '신분적·계급적' 성격을 띠는 정략적인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혼인은 특권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정권이 바뀐다거나 하면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왕규의 경우처럼 정치적 이유로 기처하거나 재혼한 사례들이 많음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는 있었지만, 고려사회가 여성의 재가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기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만약

---

117) 앞에서도 언급된 것이지만, 고려시대 혼인은 주혼자에 의해 성사되었다. 주혼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으나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 기사에 나온 '부모'는 주혼자로서의 부모이며, 주혼자인 부모의 동의 없이 기처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118) "元宗十三年 正月 … 無父母和論 無故弃妻者 停職付處" (《高麗史》志38 刑法 戶婚)

재가를 금지했다면, 이혼당한 여성의 생활보장 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버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재가가 가능한 사회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기처 하는 데 부담이 덜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재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해서, 곧 지위가 높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고려시대는 이혼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도 여성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처럼 이혼을 하기 위해 예조의 허락까지 받아야 했다면 여간한 이유로는 이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혼은 별다른 규정 없이 남성 측의 의사로 처리되고 있고, 여성 측의 경우는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③에서 길재의 누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버림받고 있으며, 고려 후기 성리학자 安珦의 孫인 安牧 역시 기처 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sup>119)</sup> 이밖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또는 부귀영화를 좇아 기처 하는 사례도 자주 눈에 띈다. 이렇듯 고려 말에 오면 칠거지악에 의한 기처뿐만이 아니라,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도 쉽게 처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무신 난은 고려시대를 구분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것을 경계로 고려를 지탱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며, 이전과 이후의 모습에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여성의 재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정표정책과 이혼사례와의 관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사회도 따라서 안정된다. 그래서 대체로 안정된 시기인 고려 전기에는 기처의 사례가 드물고, 유교이념이 담긴 정표정책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정치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후기로 갈수록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등 인륜에

---

119) "牧 嘗出其妻 元使禿萬 館于家 問其故 牧具語之 禿萬曰 婦人 髮長意短 何足過耶 諺云 一女怨天 六月降霜 子其思之 牧感其言 遂爲夫婦如初" (《高麗史》列傳18 諸臣 安珦附 安牧)

위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재가를 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sup>120)</sup> 고려 전기는 이미 정착하기 시작한 유교의 영향으로 정절에 대한 개념과 함께 수절이 권장되고 있었으며, 재가를 한다 하여도 굳이 문제 삼아 기록으로 남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 중기 이후 정치가 문란해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재가사례도 빈번해진다. 당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정략적 이유로, 혹은 권력에 의해, 혹은 성적 욕망에 의한 재가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절을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고, 권력·재력·아름다운 외모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재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여러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간혹 여성이 적극적으로 재가 혹은 삼가를 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세와 재력을 겸비한 여성들이었고, 재가와 함께 기처도 자주 당하고 있어서, 재가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차 언급하지만, 고려시대 혼인은 전근대 어느 시대보다도 정략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집안과 집안간의 일로서 중매를 통해 가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조선에 비해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혼의 자유만으로 여성의 지위를 논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

120) 공양왕 때의 재가에 대한 규제는, 고려의 법규라기 보단 조선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V. 結論

지금까지 고려시대 여성들의 재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재가에 대한 고려시대 여성들의 인식을 알아보았고, 이어서 《묘지명》·《족보》·《고려사》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재가의 성격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재가 사례의 성격과 시기적 분포 등을 분석함으로써 고려시대 여성의 생활상에 접근해 보았다.

고려시대에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들은 재가를 할 때에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절차와 의례에 따라 혼인하였으며, 만약 적법한 절차와 예를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주혼자까지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점차 유교가 정착되어 가고, 그 이전부터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정절·수절'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구체화 되어서, 고려 정부는 정표정책을 통해 '효' 뿐만 아니라 여성들, 특히 지배계급 여성들에게 '정절·수절'을 요구하였다. 물론 재가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적 규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더라도 재상급의 고위 관료 부녀자들에게 모범을 구하는 정도일 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고려사》·《묘지명》 등에서 수절과 절개가 여성의 최고 미덕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수절하지 않고 재가한 여성이 스스로를 가리켜 "정절에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표현하였다. 비록 역사 기록자들의 시각이 크게 반영되기는 하였더라도, 고려시대 여성의 재가가 '떳떳하지 않은 일',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재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가는 정치적·정략적인 목적에 이용되거나 여성이 속한 가문의 권력·재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고려시대 지배계급의 혼인이 가문간의 정략혼이 일반적이었던 만큼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밖에 성적 욕구에 의한 재가가 많았는데,

주로 권력을 가진 자가 여성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경제적 이유와 의탁할 곳이 없어서 재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승장의 어머니는 스스로 재가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식과 함께 의탁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재가를 선택하였다. 사실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재가 사유가 아니었을까 짐작되지만, 《고려사》 등에 남아있는 기록 대부분이 지배계급에 대한 기록인 까닭에 발견되는 수는 많지 않다.

《묘지명》·《족보》·《고려사》에서 재가녀가 왕과 혼인을 하고, 前夫의 자식을 데리고 재가하며, 또 남편을 버리고 재가·삼가까지 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고려시대에 여성의 재가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실절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적용 사례가 지배계급 여성들의 사례니 만큼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일반화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정략혼이 일반적이던 고려사회에서 재가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혼사를 결정함에도 신중했을 것이다.

재가를 통해 비춰지는 여성상은 얼핏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정략에 매여 있거나 권력을 가진 자에 휘둘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여성들이 재가한 뒤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해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려시대 혼인의 대부분은 정략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현대와 같이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 후 당사자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혼인은 어디까지나 집안과 집안간의 일이었고, 중매를 통해 가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의 자유만으로 여성의 지위를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이혼이 남성에게만 허용된 것이어서, 재가의 허용은 오히려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요구에 의해 처를 버리는 것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실제로 고려중기 이후 정치가 문란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처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과부로 있던 정중부의 딸과 혼인한 왕규와 처자식을 버리고 충렬왕 의붓딸과 혼인한 이영주가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즉 고려시대 여성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재가하기는 했지만, 반면에 쉽게 버려질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 양면적인 사정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재가는 조선에 비해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처의 위험성까지 갖고 있어서 재가허용의 사실만으로 여성의 지위를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 재가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권세와 재력을 가진 가문 출신이거나 권력가에 의한 재가라서, 아무런 조건도 갖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와는 사정이 달랐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려 전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재가와 기처에 의한 이혼사례가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는 고려 후기로 갈수록 빈번해지고, 반대로 유교적 덕목을 담은 정표정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회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몇몇 사료에서 보이는 재가 사례를 가지고 고려시대에 여성들의 재가가 일반적·보편적이고,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보다는 시기적으로는 무신정권 이후 고려 후기에, 계급의 측면에서는 지배계급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권력을 바탕으로 또는 정략적 목적 아래 재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參考文獻

### 1. 자료

《三國史記》·《三國遺事》

《高麗史》·《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唐律疏議》·《新唐書》·《宋史》·《金史》

《氏族源流》(趙從耘 編, 保景文化社 影印本)

《文化柳氏嘉靖譜》·《安東權氏成化譜》

《高麗墓誌銘集成》(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93)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盧明鎬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2. 단행본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을유문화사, 1969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金用淑, 《韓國女俗史》, 민음사, 1989 ; 《韓國文化史大系》4-風俗·藝術  
史上,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71.

朴龍雲, 《高麗時代史》上下, 일지사, 1987.

辛虎雄, 《高麗法制史研究》, 국학자료원, 1995.

鄭容淑, 《高麗王室 族內婚研究》, 새문사, 1988.

崔淑卿·河炫綱, 《韓國女性史》, 이화여대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1972.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83.

韓容根, 《高麗律》, 서경문화사, 1999.

許興植, 《韓國社會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8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2~25, 국사편찬위원회, 1993~1994.

역사학회, 《韓國親族制度研究》, 일조각, 1992.

靑海李氏 宗親會, 《靑海伯 李之蘭》, 靑海伯史記編纂委員會, 1975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려시대연구》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2002.

### 3. 논문

姜旻侁, 〈《高麗史》에 나타난 고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혼인관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權斗奎, 〈高麗時代 戶主의 機能과 地位〉, 《대구사학》 43, 1992.

權純馨, 〈고려 혼인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이화사학연구》 22, 1995.

權純馨, 〈고려시대 혼인제도에 대한 일 연구 - 이혼을 중심으로 -〉, 《이대사원》 29, 1995.

權純馨, 〈고려시대 婿留婦家婚에 대한 연구〉, 《이대사원》 30, 1997.

權純馨, 《高麗時代 婚姻制度 研究》, 이화여대 박사 논문, 1997.

權純馨, 〈다시 생각하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여성과 사회》 9, 한국여성연구소, 1998.

權純馨, 〈고려의 이혼과 재혼〉, 《민속학연구》 6, 1999.

權純馨, 〈고려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權純馨,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생활〉, 《국사관논총》 95, 2001.

- 김옥렬,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사입문》, 학술원, 1983.
- 金龍善, 〈고려 귀족의 결혼·출산과 수명〉, 《한국사연구》 102, 1998.
- 金銀坡, 〈상속형태를 중심으로 본 고려시대 여자의 지위〉, 《전북사학》 2, 1978.
- 金銀坡, 〈高麗時代 法制上 및 社會 通念上에서의 女子의 地位〉, 《전북사학》 3, 1979.
- 金東洙, 〈高麗時代의 相避制〉, 《歷史學報》 102, 1984.
- 金現璟, 〈高麗時代 再嫁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0.
- 김주희, 〈고려시대의 혼인 : 인류학적 해석〉, 《가족과 문화》 10집 2호, 1998.
- 盧明鎬,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 《한국사연구》 33, 1981.
- 盧明鎬, 〈高麗時代 親族組織 연구상황〉, 《중앙사론》 5, 1987.
- 盧明鎬, 《高麗時代 兩側의 親族組織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88.
- 盧明鎬, 〈高麗時代의 親族組織〉, 《국사관논총》 3, 국사편찬위원회, 1989.
- 盧明鎬, 〈高麗時代의 土地相續〉, 《중앙사론》 6, 1989.
- 朴南勳, 〈朝鮮前期 再嫁禁止法과 실제〉, 《韓國의 社會와 歷史-崔在錫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일지사, 1991.
- 朴容玉, 〈儒敎的 女性觀 재조명〉, 《한국여성학》 1, 1985.
- 박민자,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가족제도를 중심으로〉, 《덕성여대 논문집》 12, 1984.
- 朴惠仁, 〈母處夫處制 혼인거주규칙의 잔재-서류부가혼속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7, 1983.
- 朴惠仁, 〈女家에서의 婚姻式의 淵源 및 그 遷〉, 《여성문제연구》 12,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3.

- 신영숙, 〈한국가부장제의 사적고찰-고려시대와 조선 전·후기를 중심으로-〉, 《여성 가족 사회》 34, 여성한국사회연구원, 1991.
- 申虎澈, 〈高麗時代 土地相續에 대한 再檢討〉, 《歷史學報》 98, 1983.
- 尹庚子, 〈高麗王室의 婚姻形態〉, 《淑大史論》 3, 1968.
- 尹載秀, 〈高麗王朝의 婚姻攷〉, 《石堂論叢》 11, 1986.
- 李京炯, 〈高麗時代의 系譜觀念과 親族〉, 《한국의 사회와 역사》, 일지사, 1991.
- 李相佰, 〈再嫁禁止習俗의 由來에 대한 研究〉, 《李相佰著作集》 1, 을유문화사, 1978.
- 이숙향, 〈고려시대 여성의 토지노비상속에 대한 고찰〉,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李舜九, 〈朝鮮初期 朱子學의 普及과 女性의 社會的 地位〉, 《清溪史學》 3, 1986.
- 李佑成, 〈高麗時代의 家族-親族集團·社會編制 문제와의 관련에서〉,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 이정란, 〈高麗時代 婚姻形態에 대한 재검토〉, 《사총》 57, 2003.
- 李義權, 〈高麗의 財産相續形態에 관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41, 1983.
- 張炳仁, 〈高麗時代 婚姻制에 대한 再檢討-一夫多妻制說의 비판-〉, 《한국사연구》 71, 1990.
- 張炳仁, 〈조선초기 再嫁規制法의 시행경위〉,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26-1, 1990.
- 張炳仁, 《朝鮮初期 婚姻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 張炳仁, 〈조선 전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역사비평》 25, 1994.
- 鄭容淑, 〈高麗初期 婚姻政策의 추이와 王室族內婚의 成立〉, 《한국사연구

- 구》41, 1983.
- 鄭鉉栢, 〈새로 쓰는 여성의 역사-원시·고대편, 모권제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2, 창작과 비평사, 1988.
- 崔 淑, 〈羅末鮮初 鄭道傳의 婚姻制 認識〉, 《綠友研究論集》38, 1999.
- 崔淑卿, 〈高麗時代의 女性〉, 《韓國女性史》1, 이화여대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72.
- 崔在錫, 〈고려조에 있어서의 토지의 여자균분상속〉, 《한국사연구》35, 1981.
- 崔在錫, 〈高麗時代의 婚姻制度〉, 《인문논집》27, 고려대 문과대학, 1982.
- 崔在錫, 〈高麗時代의 婚姻制度〉, 《人文論集》27, 1982;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조각, 1983.
- 崔在錫, 〈고려시대 부모전의 자녀균분상속재론〉, 《한국사연구》44, 1984.
- 崔在錫, 〈社會史에서의 女, 女婿, 外孫의 社會的 地位 化〉,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24, 1985.
- 崔在錫, 〈高麗朝의 相續制와 親族組織〉, 《東方學志》3, 1982.
- 崔在錫, 〈韓國社會史에서의 婚 制度의 通時的 追求〉, 《동방학지》51, 1986.
- 韓福龍, 〈朝鮮前期 婚姻法 研究-定婚法制와 婚姻成立要件을 중심으로〉, 《가정법연구》3, 1989.
- 河炫綱,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對하여〉, 《이대사원》7, 1968.
- 許興植, 〈고려 女性의 지위와 역할〉, 《한국사시민강좌》15, 1994.
- 許興植, 〈고려 사회사 연구의 과제와 쟁점〉, 《한국 인문과학의 현황과 쟁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ABSTRACT

## **A Study on Women's Remarriage of Ruling Classes in the Koryo Dynasty**

Baek Seung Sum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modern society is changing quickly and families, especially husband-wife relations, are frequently divided. Regardless of the reason of such a division, a new husband-wife relation is generally started with a remarriage ceremony.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women's remarriage in the Koryo dynasty. While studying the marital institution, the institution of family and kinship, the history of women, and the policy of banning remarriage in the Chosun dynasty, remarriage has been briefly addressed. In addition, such studies have focused on the freedom of remarriage in the Koryo dynasty but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so-called Moonbul(門閥), which indicates the noble families in the Koryo dynasty. This paper investigates actual remarriage cases and characterizes them.

Chapter 2 presents the social and legal consensus on women's remarriage in the Koryo dynasty. Since the remained chastity or faithfulness had been socially accepted, remarriages were regarded not only as being no good but also as a shame although they were legal. In the meanwhile, describes remarriage procedures and formalities. When a woman got divorced or her husband died, she could remain alone keeping chastity or get remarried. Such a woman usually left the house of her ex-husband and came back to her parent's home with her children. Then, she got remarried according to the same marital formalities as those of the first marriage. Remarriages were arranged by go-betweens and approved by officers(主婚者). Only a remarriage that conformed to the marital formalities was legal. Otherwise, not only the parties of the remarriage but also the officer who approved the remarriage were punished. Since a remarriage was regarded as a kind of marriage, the marital formalities were enforced.

Chapter 3 analyzes actual remarriage cases in historical documents. In the Koryo society, marriages of a convenience were widespread, and marriages were not deci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a marriage but were usually arranged by a patriarch. Remarriages were no difference. Many women got remarried for the sake of a convenience or were forced to get remarried by power. This explains the fact that the new husbands of remarried women usually had no lower government positions than their ex-husbands had. Some women got remarried for living, but those women were ashamed to

have done it. Some women voluntarily got married, but their power and wealth made it possible. By the way, women usually got remarried to be a second wife. Thus, the fact that there was little restriction on women's remarriage does not mean that women had the same social power as men.

Chapter 4 focuses on the fact that remarriages occurred frequently in the late Koryo age while they were rare in the early Koryo age. Furthermore, it is easily observed in the late Koryo age that wives were deserted just to get remarried to a woman with a better political or economic background. Since remarrying and deserting a wife frequently occurred only when the country were in disorder, the argument that remarriages were common in the Koryo age should be reconsidered. Remarrying and deserting a wife were opposite the Jung-Pyo(旌表) policy, officially awarding role models such as a woman of virtue and a faithful son, in the early Koryo age, when the country was more stabl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se in those days, will be the possibility of trying to guess at the society.